Chapter Ⅰ

교육 관련 기본법령 및 교육개혁

◉ 교육 관련 기본법령 및 교육개혁 개요

▣ 교육 관련 기본법령

01. 교육법
02. 교육법 실시에 따르는 현존학교에 관한 조치령
03. 교육법시행령
04. 국립학교설치령
05. 교육세법
06.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
07. 학교정비기준령(안)
08. 사립학교법 공포(안)
09. 산업교육진흥법
10. 국민교육헌장(가칭)
11. 교육기본법

▣ 교육개혁

12. 교육제도심의회 규정(안)
13. 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회 규정
14. 교육정책심의회 규정(안)
15.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
16. 장기교육계획(안)
17.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교육부문 계획(안)
18. 교육개혁심의회 설치계획(안)
19. 교육정책자문회의
20. 창조적 지식국가 건설을 위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1999～2003)

교육 관련 기본법령 및 교육개혁 개요

교육 관련 기본법령은 1949년 12월 31일에 법률 86호로 제정된 「교육법」을 위시하여 각 시기마다 교육전반에 영향을 미친 법령들을 의미한다. 현대 한국교육의 근간이 되는 법령은 많이 있으나, 교육 관련 기본법령들은 여타 법령 제정의 근간이 되고, 또한 한 시대의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지향점이 된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한마디로 교육 관련 기본법령들은 한 시대 교육체제의 기본 틀을 구체화한 상징물과 같은 것이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교육 관련 기본법령은 현대 교육체제를 지탱하는 기본 프레임이라 할 수 있고, 그만큼 그 골격에 큰 변화는 없다. 관련 법령 제정 이후 수 차례 또는 수 십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그 기본 성격이 변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1980년대 중반 이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된 교육개혁은 한편으로는 기본법령에 제시된 교육이념을 현대적으로 구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교육체제 전반을 점차적으로 변화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본다면, 현대 한국교육은 「교육법」을 위시한 기본법령이 제시하는 법규적 틀 내에서, 일련의 교육개혁에 의해 추진된 제반 정책의 영향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해 온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광복 이후 현대적인 교육체제의 기본 틀의 형성 그리고 그러한 기본 틀의 재구성 과정을 개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 장에 수록된 관련 기록들의 의미를 부각시키고자 한다.

1. 현대적 교육체제의 구상(1945.8～1948.8)

광복 직후 미군정 3년 간은 식민지 지배체제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국가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고민의 시기였다. 교육 부문에서도 일제 강점기간 동안 조선의 교육을 지배했던 「조선교육령」을 폐기하고, 현대적인 교육체제를 구상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노력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조선교육심의회의 활동이다.

조선교육심의회는 미군정청 학무국의 자문기관으로서 1945년 11월부터 1946년 3월까지 총 20회의 전체회의와 105회의 분과위원회를 열어 교육체제 전반을 논의하였다. 이 심의회는 ①교육이념, ②교육제도, ③교육행정, ④초등교육, ⑤중등교육, ⑥직업교육, ⑦교원교육, ⑧고등교육, ⑨교과서, ⑩의학교육 등 10개 분과로 구성되었는데, 이러한 조직 구성은 교육이념, 학교제도, 교육행정조직 등 교육체제 전반을 새롭게 재구조화하려는 의도를 잘 보여준다.

우선 교육이념의 측면에서는 일제 강점기의 교육이념을 상징하는 '충량한 신민'을 대신할 새로운 교육이념 수립이 핵심적인 과제로 논의되었다. 그 결과 새로운 시대의 교육이념으로 '홍익인간'을 확정하였다. 당시 홍익인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기는 하였으나, 홍익인간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이념과 배치되지 않고, 더욱이 민족주의 이념과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최종적으로 수용되었다. 이 점에서 '홍익인간'은 새로운 시대적 요구, 즉 민주주의의 확산과 민족주의의 확립을 집약하는 이념으로 이해되었고, 그 내용은 이후 제정된 「교육법」이나 「교육기본법」에도 반영되었다.

다음으로 학교제도의 측면에서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문제가 핵심 사안이었다.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은 초등교육의 의무화가 관건이었고, 공정한 교육기회 부여는 단선형 학제의 구축이 주요 현안이었다. 의무교육의 실현은 민주주의 교육체제에서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체제로서 교육받을 권리는 그러한 보편적 권리의 핵심이고, 또한 민주주의 체제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무교육을 실현하는 데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되지 못하였다. 조선교육심의회는 의무교육의 과제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로 넘기고, 공정한 교육기회의 부여를 위한 새로운 학제 구축에 집중하여 6-3-3-4를 골간으로 하는 단선형 학제를 제안하였다. 조선교육심의회가 제안한 새로운 학제 또한 교육이념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다.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의 교육연한과 조직구성에 다양한 이견이 있었고, 일제 강점기부터 고착된 학교제도가 새로운 변화를 시행하

는 데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6-3-3-4제는 「교육법」 제정 당시에 6-4-2-4제로 바뀌었다가, 곧바로 환원되는 과정을 겪기도 하였다. 이것은 새로운 학제의 구축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조직의 측면에서는 민주적인 교육행정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과제였다. 일제 강점기의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조직을 민주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민주주의 교육체제 형성에 근간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조선교육심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정부수립 직전인 1948년 8월 12일 미군정청이 지방교육자치제와 관련된 법령을 공포함으로써, 「교육법」에 교육자치제 규정을 법제화하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이처럼 미군정기는 홍익인간의 교육이념 수립, 의무교육 실현, 단선형 학제의 구축, 민주적 교육행정조직으로의 개편 등 교육체제 전반에 걸친 논의가 수렴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만큼 일제 강점기의 식민지적 교육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현대적 교육체제가 모색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제정된 「교육법」은 바로 이 기간 동안 구상된 새로운 교육체제의 밑그림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2. 「교육법」의 제정과 현대적 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1948.8～1961.5)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곧바로 현대 교육체제의 근간이 되는 「교육법」 제정이 시작되었다. 1948년 9월 문교부는 법안의 초안 작업에 착수하여, 1949년 3월에 정부(안)을 국회에 이송하였는데, 이때의 법안은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 「사회교육법」으로 구분된 교육 3법이었다. 그러나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교육 3법은 단일법인 「교육법」으로 통합되고, 세부항목에서도 상당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교육법」은 1949년 12월 31일에 법률 제86호로 최종 공포되었다.

이처럼 「교육법」이 제정·공포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은 그 자체가 현대 교육체제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작업이 얼마나 지난한 일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비록 미군정기에 조선교육심의회의 활동을 거치면서 교육이념, 의무교육, 학제, 교육행정조직의 개략적인 윤곽은 잡혔지만, 아직 각 사안마다 상당한 이견이 남아 있었고,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수정(안)이 제출됨으로써 논란이 불가피하였던 것이다.

첫째, 교육이념의 측면에서는 '홍인인간'이라는 표현은 유지되었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민족적 민주주의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과 민주주의만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 사이에 논란이 있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민족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교육법」 제1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 제1조. 敎育은 弘益人間의 理念아래 모든 國民으로 하여금 人格을 完成하고 自主的 生活能力과 公民으로서의 資質을 具有하게 하여 民主國家 發展에 奉仕하며 人類共榮의 理想實現에 寄與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둘째, 의무교육에 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 민주주의 교육체제에서 의무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의무교육의 대상기간이나 지원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특히 무상교육의 실시는 특정 아동이 경제적 여건 때문에 취학할 수 없는 사태를 방지하는 조치로서, 의무교육 실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은 모든 아동에게 초등교육을 실시할 교육시설이나 교원조차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교육기간 동안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수록하지는 못했다. 결국 「교육법」에는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제8조. 모든 國民은 六年의 初等敎育을 받을 권리가 있다. 國家와 地方公共團體는 前項의 初等敎育을 爲하여 必要한 學校를 設置經營하여야 하며 學齡兒童의 親權者 또는 後見人은 그 保護하는 兒童에게 初等敎育을 받게 할 義務가 있다.

셋째, 학제는 무엇보다도 논란이 많았던 사안이었다. 일제 강점기의 차별적인 복선형 학제를 폐지하고 민주적인 단선형 학제를 구축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지만, 초등교육-중등교육-고등교육의 체제를 새롭게 구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중등교육의 구분과 수업연한 문제는 핵심사안이

었다. 학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조선교육심의회에서 단선형의 6-3-3-4제를 제안한 바 있고, 이 방안대로라면 중등교육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으로 편제시켜야 했다. 그러나 고등학교 진학자가 많지 않았다는 점은 새로운 학제를 시행하는데 어려움을 주었다. 이 때문에 중학교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연장하여 보다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자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었다. 결국 「교육법」에는 중학교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고,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을 2~4년으로 하는 내용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곧바로 개정되어 1950년 3월 10일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학제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른 학제 개편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

넷째, 민주적 교육육행정조직의 구축에 관한 논의는 교육자치제의 시행에 집중되었다. 교육자치제는 미군정기에 군정 장관이 주도하여 제정한 「교육구회의설치」(법령 제217호)와 「공립학교재정경리」(법령 제218호)에 의해 1948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법령의 취지는 교육의 특수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었고, 군정 장관은 교육자치제를 한국인에게 주는 선물이라고까지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이후 고착되었던 교육행정의 중앙집권화 경향 그리고 내무행정의 일환으로서의 교육행정이라는 관행이 영향을 미쳐, 교육자치제를 법률로 명문화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교육자치제는 「교육법」의 규정으로 수록되었고, 1952년 4월 25일 지방자치제가 시행됨으로써, 같은 해 6월 4일 교육자치제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이처럼 「교육법」은 식민지의 유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적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다. 「교육법」의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교육체제는 홍익인간을 이념으로 하는 민주주의 교육을 지향하고,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교육을 시행하며, 민주적인 단선형 학제를 시행하고, 교육자치제를 통한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한다는 기본 틀이 완성되었다. 이러한 내용의 「교육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대적인 교육체제를 구체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법령 제정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교육법」은 어디까지나 새로운 교육체제의 개략적인 틀을 제시하는 것이고, 각 조항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법령에서 세세하게 규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1950년대에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교육 관련 법령들이 속속 마련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법령의 정비과정은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현대적 교육체제가 점차 구체화되는 과정을 의미하기도 했다.

1950. 4. 24	교육법 실시에 따르는 현존하는 학교에 관한 조치령 (대통령령 제331호)
1952. 4. 23	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633호)
1953. 4. 18	교육공무원법(법률 제285호)
1953. 4. 20	국립학교설치령(대통령령 제780호)
1954. 4. 20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사범학교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령(문교부령 제35호)
1955. 8. 4	대학설치기준령(대통령령 제1063호)
1958. 8. 28	교육세법(법률 제496호)

3. 국가주도 교육체제의 강화와 경제개발 우선주의(1961.5~1979.12)

1960년대까지 현대 교육은 아직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초등교육만하더라도 1954년부터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1959년에 취학률 96%를 달성하고 이때 의무교육이 실현되었다고 말하지만, 거대학교·과밀학급의 운영 그리고 공민학교를 비롯한 보조학교의 수용에 힘입은 바 크다. 더욱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여전하였기 때문에, 무상교육의 실현은 아직 미래의 일이었다. 따라서 1960년대 교육의 현실은 아직 「교육법」에서 그려낸 기본체제를 갖추는 데에 전력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60년대에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조하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교육체제는 강력한 국가주도형으로 전환하였다. 그 직접적인 계기가 1961년 5월 16일에 일어난 군사정변이다. 군사정변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년 9월 1일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법률 제1362호로 제정하였는데, 이 임시특례법은 기존의 교육에 관한 어느 법령보다 먼저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 점에서 보면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은 이 기간 동안 사실상 「교육법」을 대체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후에 연속적으로 제정된 다른 법령을 통해 보다 구

체화되었다. 즉 1961년 11월 23일에 「학교정비기준령」(각령 제283호)을 제정하여 각급 학교 정비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1963년 6월 26일에 「사립학교법」(법률 제1362호)을 공포하여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이 국가주도의 교육체제를 지향한다는 점은 이 법안의 제안 이유에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 敎育事業은 國家의 將來를 질머질 人材를 養成하는 國家的 事業으로서 그 適否는 한 나라의 國運을 좌우하게 되는 까닭에 國家의 委任에 의하여 國民敎育事業을 擔當하는 者(學校의 設立經營者)는 다른 누구보다도 國家의 强力한 統制를 받아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비록 이하의 내용에서는 주로 사립학교에 관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교육이 국가의 강력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방침은 교육체제 전반에 걸쳐 적용되었다. 주요 내용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의 정비 : 문교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학교 및 학과의 폐합을 명하거나, 학급 및 학과의 정원을 재조정할 수 있다.

둘째, 교육자치제 폐지 : 종래의 상향식 추천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전환한다.

셋째, 교수회의 권한 삭제 : 대학교원의 임명에 교수회의 동의권을 삭제하고 감독청의 권한을 강화한다.

넷째, 교원의 단결권 제한 : 교원의 노동운동 및 단체적 행위를 금지한다.

다섯째,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 :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문교부 장관의 감독권을 강화한다.

여섯째, 처벌 강화 : 일정한 위법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부과한다.

이러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법」의 기본 정신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첫째 교육이념의 측면에서 「교육법」은 '홍익인간'의 이념을 민주주의 원리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에 비하여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은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의 통제를 무엇보다도 강조한다. 이러한 변화는 양자 사이에 홍인인간이라는 교육이념을 해석하는 방식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교육법」 제정 당시에 잠재해 있었던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갈등 관계가 당시에는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지만, 이제는 민족주의 심지어 국가주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 전환은 1960년대부터 '국민정신교육', '국적 있는 교육', '민족주체성 교육' 등이 강조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1968년의 「국민교육헌장」의 제정, 1972년의 유신헌법의 공포와 한국적 민주주의의 강조, 1981년의 국민정신교육추진종합계획 시행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둘째 교육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통제를 강조한다는 점은 각급 학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교원의 권한을 제약한다는 점에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동안 시행되었던 교육자치제를 사실상 폐지한 것은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이 기존의 「교육법」에서 구상한 현대적 교육체제에 상당한 변형을 일으켰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육자치제는 읍·면 단위의 교육구를 바탕으로 상위의 교육위원회를 상향식으로 구성하고, 각 자치단체마다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로 시행되었다. 이에 비하여 임시특례법에서는 각 지역의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을 감독청에서 임명함으로써, 사실상 각 지역의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는 문교부의 교육정책을 시행하는 조직으로 전환되었다.

이처럼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은 교육이념이나 교육행정조직의 측면에서 「교육법」의 기본정신과는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만큼 1960년대 이후의 교육체제는 이전과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하여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학제를 정비하는 과제는 이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우선 의무교육은 국가주도의 교육체제에서도 시급히 실현해야 하는 사안이었고, 실제로 1960년대 중반에 초등교육은 완전 취학에 이르러 의무교육의 기본을 갖출 수 있었다. 그리고 1970년대 말까지 중학교의 취학률도 95%를 상회하여 완전 취학에 가까워졌고, 고등학교의 취학률도 거의 80%에 이르렀다.

이처럼 1960년대부터 1970년대는 의무교육을 실현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고, 이 점에서 이 시기의 교육체제는 「교육법」에서 구상한 내

용을 양적인 측면에서 충족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1960년대 이후의 새로운 특성이 나타났다. 경제개발계획이 중요한 국가시책으로 추진되면서, 교육을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는 제도로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963년 9월 19일에 제정된 「산업교육진흥법」(법률 제1403호)이다.

「산업교육진흥법」은 국가경제발전에 도움을 주는 우수한 기술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실업교육에 대한 지원, 특히 공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이러한 정책에 의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강화되고, 실업계 학생수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실업계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학제개편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1964년 교육제도심의회는 실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학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다양한 학제 개편(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1971년에는 플로리다대학 연구팀이 내한하여 교육전반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중등교육 단계의 직업교육 개편과 새로운 학제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도 있었다.

이것은 이 시기의 교육체제가 초등교육－중등교육－고등교육의 기본 골격을 갖추고, 양적인 측면에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교육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교육체제로 전환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다만 1960～1970년대에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적 자본의 양성이라는 관점에 지나치게 경도되었다는 한계는 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 1980년대부터는 경제발전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적 통합, 학생 개개인의 개성 신장 그리고 교육복지의 강화를 위한 보다 전면적인 교육체제의 혁신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일련의 교육개혁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4. 전면적 교육개혁의 추진(1980년 이후)

1980년대 중반 이후의 교육정책은 교육개혁기구를 중심으로 교육전반에 걸친 혁신방안을 제시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전에도 교육관련 자문기구는 있었지만, 개별 정책에 관한 심의기구 역할에 그치고, 교육정책 수립에서 주도적으로 역할까지 담당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비하여 1969년에 조직된 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회는 이전과 다른 위상과 비전을 가진 자문기구였다. 우선 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회는 문교부 장관 자문기구를 넘어 국무총리 자문기구로 출발하였다. 이것은 교육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정책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또한 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회는 개별 사안이 아니라 국가교육 전체를 조명하면서, 향후 15년 간의 장기적인 교육계획(1972～1986년)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실업교육, 교원교육, 취학전 교육, 해외교육, 특수교육, 학교외 교육, 통일교육 등 10개 분야로 구분되고, 각 분야마다 학생, 교원교육 방안, 시설, 행정, 재정 등 6개 항목으로 제시되었다. 비록 이 장기계획은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진행되었던 교육개혁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회가 새로운 교육자문기구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1978년에 한국교육개발원이 작성한 '교육발전의 전망과 과제, 1978～1991'는 교육발전의 비전을 확대하고 실행력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교육개혁의 새로운 추진방식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보고서는 1990년대의 사회를 고도산업사회, 복지사회, 도덕사회로 규정하고, 고급두뇌의 인력공급을 통한 성장의 지속, 교육기회의 확대와 교육복지의 강화를 통한 평등균등의 실현, 정신교육 및 도덕교육을 통한 문화창달로 설정하였는데, 이것은 이 계획이 이전의 경제발전 일변도에서 벗어나 교육복지나 문화와 같은 보다 폭넓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경제기획원과 협의하여 매년의 예산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가진다. 비록 곧이어 발생한 정치적 사건으로 계획은 중단되었지만, 1980년대 이후 교육개혁의 주요 기반이 되었다.

1985년에 조직된 교육개혁심의회는 이러한 노력 등을 바탕으로 하면서, 교육개혁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처음으로 대통령 직속 교육자문기구로 출범하였다. 교육개혁심의회는 교육제도분과, 초중등교육분과, 고등교육분과, 교육발전분과 등 4개 분과로 활동하였는데, 각 분과별로 현안을 진단하고 다양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교육제도분과에서 수행한 학제의 적절성 검토, 사학정책 보완, 교육자치제 연구는 1960

년대 이후 굳어진 국가주의 교육체제를 벗어나기 위한 시도로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초중등교육분과에서 제안한 유아교육의 확충이나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고등교육분과에서 제안한 학원자율화 정책 등도 교육복지의 강화 및 교육민주화의 확대 조치로써 주목된다.

교육개혁심의회의 활동 이후, 역대 정부에서는 각각 대통령 교육자문기구를 조직하여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하였다. 【표 1】에 보이듯이, 노태우 정부의 교육정책자문회의,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 김대중 정부의 새교육공동체위원회, 노무현 정부의 교육혁신위원회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이것은 각 정부가 교육개혁을 중요한 정책 사안으로 인정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1】 역대 정부의 교육개혁자문기구

장기종합 교육계획심의회	교육개혁심의회	교육정책자문회의	교육개혁위원회	새교육공동체 위원회	교육혁신위원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국무총리자문기구	대통령자문기구	대통령자문기구	대통령자문기구	대통령자문기구	대통령자문기구
1969～1972년	1985～1987년	1989～1993년	1994～1998년	1998～2000년	2003～2008년

비록 각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이 세부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한 지향성을 가진다. 그것은 「교육법」에 제시된 홍익인간의 이념을 재해석하면서, 의무교육을 위시하여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현실과 미래 사회에 부응하는 학제를 구축하며 교육자치체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교육문화를 실현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1990년대부터 재개된 지방교육자치제의 시행과 1997년에 새로 개편된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 「평생교육법」의 3법 체제는 이러한 변화의 징표로 주목된다.

Chapter I

01 교육법

관리번호 : 1A00614174531681
쪽　　수 : 81
생산년도 : 1949
생산기관 : 법제처

「교육법」은 1949년 12월 31일 법률 제86호로 제정된 교육 관계 기본법이다.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면서, 현대 한국교육의 이념과 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교육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교육이념과 제도에 관한 논쟁 그리고 현대적 법규 제정의 미숙 등의 요인이 겹쳐져서, 1년여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제정될 수 있었다. 제정 당시 「교육법」은 총 11개장 177개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1장 총칙(1조～14조), 2장 교육구와 교육위원회(15조～67조), 3장 교육세와 보조금(68조～72조), 4장 교원(73조～80조), 5장 교육기관(81조～149조), 6장 수업(150조～154조), 7장 학과와 교과(155조～156조), 8장 교과용도서(157조), 9장 장학과 장학금(158조～162조), 10장 벌칙(163조～166조), 11장 부칙(167조～177조) 등으로 구분되었다. 「교육법」은 이후에 제정되는 교육 관련 법령의 법적 기반으로서 중요성을 가지며, 1997년 교육 관련 법체계가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 「사회교육법」의 3법 체제로 전환될 때까지 총 38차의 개정을 거치면서 보완되었다. 이 기록물에는 법률 공포 승인서, 「교육법」 원문이 수록되어 있다.

「교육법」의 제정은 현대 한국교육의 법적 기반을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전까지 교육 관련 규정은 일제 강점기의 총독부령(칙령의 형식)이나 미군정기의 군정법령 또는 일반명령의 형식으로 제정됨으로써, 민주주의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명령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에 비하여 「교육법」은 행정당국인 문교부만이 아니라, 국회 문교사회위원회가 각각 초안을 마련하고 수차에 걸친 심의와 토론을 거치면서 제정된 최초의 민주적 교육관계법이다. 특히 「교육법」은 대한민국 「헌법」 16조에 명시된 국민의 교육권 보장, 무상의무교육의 시행 그리고 교육제도의 법률주의 정신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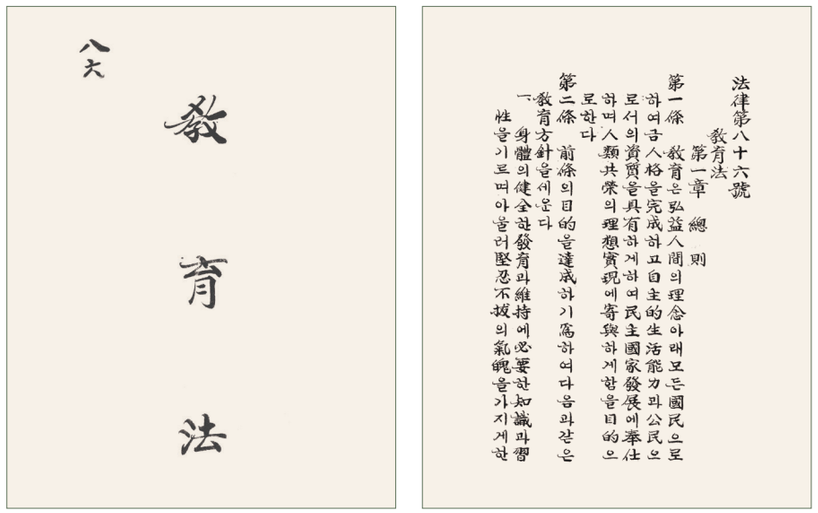
八大

教育法

法律第八十六號
教育法
第一章 總則
第一條 教育은 弘益人間의 理念아래 모든 國民으로 하여금 人格을 完成하고 自主的 生活能力과 公民으로서의 資質을 具有하게 하여 民主國家發展에 奉仕하며 人類共榮의 理想實現에 寄與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二條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과 같은 教育方針을 세운다
一. 身體의 健全한 發育과 維持에 必要한 知識과 習性을 기르며 아울러 堅忍不拔의 氣魄을 가지게 한

【그림 1】〈교육법〉 표지 및 내용 (1A00614174531681, 1,361쪽, 1,364쪽)

국민의 교육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교육법」 제1조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함으로써,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교육을 시행하겠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정치적·종교적 영향을 배제하고 교육본래의 목적을 추구하는 교육의 자율성 원칙(제5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수학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교육기회 균등의 원칙(제9조), 국가와 공공단체가 충분한 교육시설과 공정한 교육행정을 시행해야 한다는 국가 책무성의 원칙(제12조 및 제14조) 등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기본원칙에 따라 제2장과 제3장에서 「교육법」 전체의 1/3에 달하는 58개 조항에 걸쳐 교육자치제와 그에 따른 재원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록하였다. 이것은 교육자치제에 기반을 둔 민주적 교육체제를 실현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록 교육자치제는 1961년에 발생한 군사정변 이후 중단되었지만, 1991년 3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4347호)이 제정되어 교육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데에 근거로 작용하였다.

무상의무교육의 시행과 관련해서는 제8조에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동시에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는 전항의 초등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학교를 설치 경영하여야 하며 학령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그 보호하는 아동에게 초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초등교육 의무교육 확충계획의 법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교육법」에 초등교육 의무교육의 조항이 명시됨으로써, 문교부는 곧바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의무화를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1950년에 발발한 6.25전쟁의 여파로 지연되었다. 1950년대 말에 가서야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1954~1959)'을 통해 취학률 96.4%를 달성하고, 1960년대에는 2차에 걸친 '의무교육시설확충 5개년 계획(1962~1971)'을 추진하여 학교시설 확충, 과밀학급 해소, 교원 확보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게 되었다.

교육제도의 법률주의와 관련해서는 「교육법」의 제정으로, 세부적인 관련 법과 규정이 연이어 갖추어지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교육법」 부칙의 조항에 따라 1952년 4월 23일에 「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633호)이 제정되었고, 「교육법시행령」 공포 이후 각종 교육 관련 법령의 제정도 속도를 내게 되었다.

02 교육법 실시에 따르는 현존학교에 관한 조치령

관리번호 : 1A00614174532916
쪽　　수 : 5
생산년도 : 1950
생산기관 : 법제처

「교육법 실시에 따르는 현존학교에 관한 조치령」(1950.4.24, 대통령령 제331호)은 기존 학제를 「교육법」에 규정된 학제로 개편하기 위한 행정명령이다. 이 명령은 총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 대상은 중등교육기관 및 고등교육기관의 개편에 관한 사항이다. 이 조치를 통해 6-3-3-4제의 단선형 학제를 수립함으로써, 현재 학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 기록물에는 1950년에 공포한 1차 조치령과 1951년 8월 24일에 개정한 2차 조치령(대통령령 제528호)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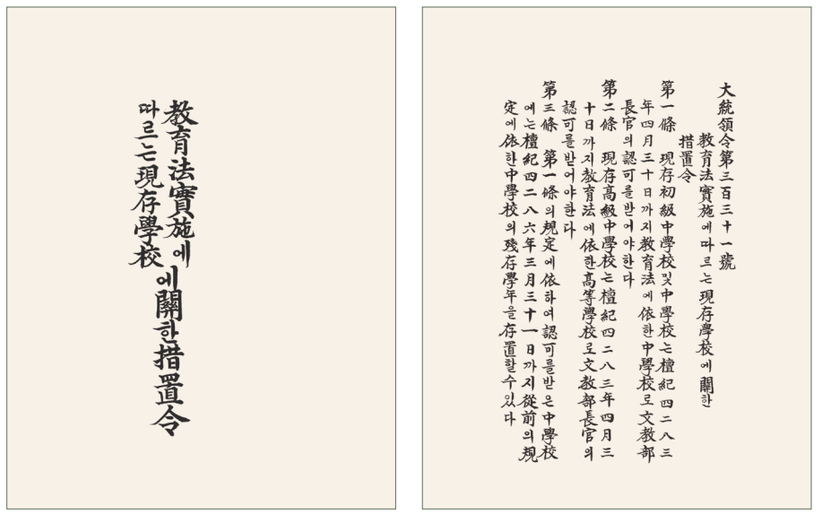
教育法實施에 따르는現存學校에關한措置令

大統領令第三百三十一號
教育法實施에따르는現存學校에關한
措置令
第一條 現存初級中學校및中學校는檀紀四二八三年四月三十日까지教育法에依한中學校로文敎部長官의認可를받어야한다
第二條 現存高級中學校는檀紀四二八三年四月三十日까지教育法에依한高等學校로文敎部長官의認可를받어야한다
第三條 第一條의規定에依하여認可를받은中學校에는檀紀四二八六年三月三十一日까지從前의規定에依한中學校의殘存學年을存置할수있다

【그림 2】〈교육법 실시에 따르는 현존학교에 관한 조치령〉 표지 및 내용
(1A00614174532916, 18,299쪽, 18,301쪽)

「교육법」 제정 당시의 학제는 미군정청이 정한 신학제 규정에 따라 운영되었다. 미군정청 학무국은 조선교육심의회의 교육제도분과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학제(안)을 1946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주요 내용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초급중학교 및 초급실업중학교, 고급중학교 및 고급실업중학교, 사범학교), 대학 및 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의 수업연한과 대상 연령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학제가 시행되던 상황에서 1949년 12월 31일 「교육법」이 제정되었는데, 여기에서는 학교의 종류와 수업연한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즉 교육기관을 다룬 조항에서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고 명시한 다음, 국민학교(6년), 중학교(4년), 고등학교(2～4년), 대학(4～6년), 사범학교(2년), 사범대학(2～4년), 기술학교(1～3년), 고등기술학교(1～3년), 공민학교(3년), 고등공민학교(1～3년), 특수학교, 유치원, 각종학교로 정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법」의 학제 규정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곧바로 시행되지 못하고, 몇 개월 후인 1950년 3월 10일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이 중등교육 부분이었는데, 학제 개정(안)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구분하는 「교육법」의 규정은 유지하면서, 각각 수업연한을 3년으로 정하였다. 이처럼 「교육법」의 학제 부분이 확정됨으로써,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존의 학교들을 새로운 학제에 편입시킬 필요가 생겼고, 1950년 4월 24일 대통령령 제331호로 「교육법 실시에 따르는 현존학교에 관한 조치령」이 발효되었다.

1조는 현존 초급중학교 및 중학교를 4월 30일까지 중학교로 전환하고 문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며, 2조는 현존 고급중학교를 마찬가지 방식으로 고등학교로 전환하도록 한 내용이다. 그리고 3조는 과도적인 조치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잔존 학년을 1953년 3월 31일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4조는 기존의 공립사범학교에 관한 것으로 4월 31일자로 국립사범학교로 인정한다는 규정이고, 5조는 기존의 초급대학교와 국립대학에 관한 것으로 초급대학은 1951년 3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롭게 인가를 받도록 하고, 국립대학은 「국립대학교령」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마지막 6조에서는 기존 중등학교의 개편과 관련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개편과정은 해방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중등학교의 운영방안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중등학교와 관련해서는 일제강점기의 학제에서 탈피

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분리하는 문제와 수업연한을 적정화하는 문제가 중요한 논쟁점이었는데, 「교육법」에 의해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분리가 명시되고, 개정(안)을 통해서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수업연한이 확정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당시까지 지속되었던 6-6-4제의 학제가 6-3-3-4제의 단선형 학제로 개편되게 되었다. 이 점에서 「교육법 실시에 따르는 현존학교에 관한 조치령」은 민주적 학제의 형성과정에서 당시 문교부가 시행한 과도적인 조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교육법 실시에 따르는 현존학교에 관한 조치령」은 인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완하여, 1951년 8월 24일 대통령령 제528호로 개정·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학제로 개편되는 각급 학교에게 인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중등학교의 경우는 학교의 명칭, 위치, 설치학과, 학급수, 1951년 현재 학급편제 및 학생수, 학칙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초급대학의 경우는 목적, 명칭, 위치, 학칙, 부속기관 자료, 교원 및 직원의 직제와 직원일람표, 경비 및 유지방법, 완성연도까지의 수지개산, 도서 및 시설의 목적과 계획표, 재단법인 기부행위, 기본재산목록 및 개편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고등기술학교의 경우는 명칭, 위치, 학과,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학칙, 시설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Chapter I

03 교육법시행령

관리번호 : 1A00614174533375
쪽　　수 : 88
생산년도 : 1952
생산기관 : 법제처

「교육법시행령」(1952.4.23, 대통령령 제633호)은 「교육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다. 전문은 6개장과 부칙으로 구성되고, 총 204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 1장은 교육구와 교육위원회(제1조~제38조), 2장은 교육세와 보조금(제39조~제42조), 3장은 교원(제43조~제61조), 4장은 교육기관(제62조~제187조), 5장은 교과용도서와 수업용보조물(제188조~제196조), 6장은 학교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제197조)이고, 부칙은 「교육법시행령」의 시행과 과도적인 조치에 관한 사항(제198조~제204조)으로 되어 있다. 이후 「교육법시행령」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총 88차례 개정되었고, 「교육법」이 폐지되고 교육 3법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1998년에 폐지되었다. 이 기록물에는 법제처장이 공보처장에게 보내는 법령공포 요청 공문, 이승만 대통령 이하 국무위원의 공포 승인서, 법령 심의승인표가 있고 「교육법시행령(안)」이 첨부되어 있다.

大統領令第　號

敎育法施行令(案)

敎育法施行令(案)

第一章　敎育區와敎育委員會

第一節　敎育區

第一條　敎育區가새로設置되었을때에는當該敎育區敎育監이任命될때까지그敎育區의區域이從來에屬하였던敎育區의敎育監이그職務를行한다

前項의境遇에關係敎育區가二以上있을때에는道知事의指揮하는者가그職務를行한다

第二條　敎育法(以下本令에서는簡稱한다)第十六條第三項의所掌에屬한事項이라함은敎育費, 特別賦課金과賦役現品의賦課徵收에關한事項을말한다

第三條　敎育區가法第十七條第三項에依한國民學校의設置또는敎育費

【그림 3】〈교육법시행령〉 표지 및 내용 (1A00614174533375, 20,926쪽, 20,931쪽)

1949년 12월 31일 「교육법」이 제정되고, 그 시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제177조). 「교육법」은 정부수립 이후 새로운 교육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청사진이기도 하였는데, 그만큼 현행 교육제도의 상당 부분이 개편되어야 했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새로 제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교육법시행령」은 곧바로 제정되지 못하고, 1952년 4월 23일에야 대통령령 제633호로 제정될 수 있었다. 「교육법시행령」이 이처럼 지체된 것은 「교육법」 공포 직후 새로운 학제에 관한 수정 논의가 일어났고, 여기에 1950년 6.25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법」이 한국의 교육제도를 완전히 새롭게 구축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기초(안)을 마련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한 요인도 작용하였다.

이러한 「교육법시행령」은 「교육법」의 기본 체제를 따르고 있는데, 제1장 교육구와 교육위원회는 「교육법」의 2장, 제2장 교육세와 보조금은 「교육법」의 3장, 제3장 교원은 「교육법」의 제4장, 제4장 교육기관은 「교육법」의 제5장, 제5장 교과용도서와 수업용 보조물은 「교육법」의 제8장에 대응된다.

「교육법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교육자치제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이다. 「교육법」 제2장 교육구와 교육위원회에서는 군단위의 교육구와 교육위원회, 시(특별시 포함) 및 도 단위의 교육위원회 그리고 문교부 장관 자문기구로서의 중앙교육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각 단계의 교육위원회가 조직되기 위해서는 최하위의 교육구 설정과 군단위 교육위원회의 선출이 시행되어야 했다. 이 때문에 「교육법」 제20조에서는 "구교육위원회는 군수와 구내 각읍면의회에서 1인씩 선출한 위원으로써 조직한다"고 한 후, "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로 함으로써 교육위원회 위원 선출과 관련된 사항을 「교육법시행령」에 위임하였다. 1952년 4월 「교육법시행령」의 제정과 지방의회의 구성이 갖추어짐으로써 교육위원회의 선출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1952년 6월 4일을 기해 최초의 교육자치제가 시행될 수 있었다.

둘째는 새로운 학제의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새로운 학제의 도입으로 인해, 기존의 학교는 명칭과 수업연한 등을 변경하고, 이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했다. 「교육법 실시에 따르는 현존학교에 관한 조치령」은 이러한 승인절차에 관한 법령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조치 이외에 각급 학교 교원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 각급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설립, 폐지, 편제, 취학, 학위 등), 교과서 검인정 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였고, 이와 관련된 내용이 「교육법시행령」의 2장부터 5장까지 규정되었다.

이러한 기본내용에 제6장 학교시설의 이용이 추가되었는데, 그 내용은 "학교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의 시설은 사회교육 기타 공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추진 중이던 문맹교육 등을 위해 학교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마지막 부칙에서는 과도적인 조치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과도적인 조치는 교육자치제에 관한 내용과 기존 학제의 졸업자 등에 관한 내용이다. 교육자치제에 관해서는 「교육법시행령」에 따라 교육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의 교육자치제 시행방안을 담고 있고, 기존 학제의 각급 학교 졸업자 등을 새로운 학제에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교육법시행령」은 「교육법」의 중심 내용, 즉 교육자치제의 시행과 새로운 학제의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실행하는 세부적인 조치와 관련된 것으로서, 현대 한국 교육이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04 국립학교설치령

관리번호 : 1A00614174533600
쪽　　수 : 23
생산년도 : 1953
생산기관 : 법제처

「국립학교설치령」(1953. 4. 20, 대통령령 제780호)은 「교육법」과 「교육법시행령」에 근거하여 국립학교의 직제와 운영을 규정하고, 국립학교의 범위를 명시하는 법령이다. 전문은 제1장 총칙을 비롯하여 총 5개 장과 부칙으로 구성되고, 전체 28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 마지막 부분에는 〈별표〉 각종 국립학교의 명단, 위치, 조직 등을 싣고 있다. 「교육법」이 폐지되고, 교육 3법체제로 변경된 뒤에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법령으로 개정되었다. 이 기록물에는 법제처장이 공보처장에게 보내는 법령공포 요청 공문, 대통령 이하 국무위원의 공포 승인서가 있고 국립학교설치령(안)이 첨부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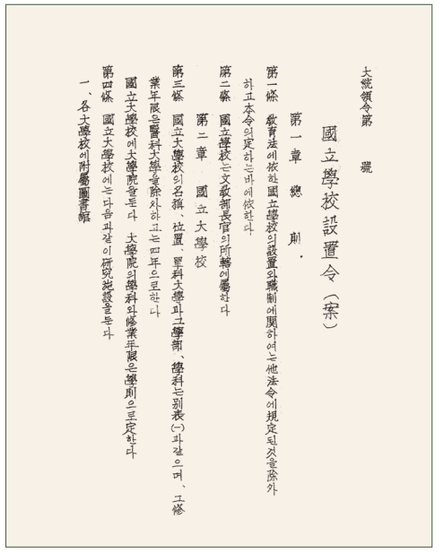
大統領令第　號

國立學校設置令（案）

第一章　總　則

第一條　敎育法에依한國立學校의設置와職制에關하여는他法令에規定된것을除外하고本令의定하는바에依한다

第二條　國立學校는文敎部長官의所轉에屬한다

第二章　國立大學校

第三條　國立大學校의名稱、位置、學科大學및大學院(一)과같으며、그修業年限은學科大學을除外하고는四年으로한다

國立大學校에大學院을둔다　大學院의學科및修業年限은學則으로定한다

第四條　國立大學校에는다음과같이硏究室을둔다

一、各大學校에附屬圖書館

【그림 4】〈국립학교설치령〉 표지
(1A00614174533600, 22,521쪽)

「교육법」 제83조는 교육기관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는데, 국가가 설립 경영하는 학교는 국립학교, 특별시·도·시 또는 교육구가 설립 경영하는 학교는 공립학교(시립학교·도립학교 또는 구립학교라고도 함),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 경영하는 학교는 사립학교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각급 교육기관에 관한 이하의 조항은 공립과 사립학교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국립학교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교육법시행령」도 마찬가지로, 「교육법」에서 위임한 각급 학교의 직제·정원·설립·폐지·편제·취학·학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국립학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1952년 7월 4일부터 1953년 3월 18일까지 「국립학교설치령(안)」을 심의하여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1953년 4월 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20일에 「국립학교설치령」을 대통령령 제780호로 공포하였다.

제1장 총칙에서는 이 명령이 「교육법」에 제시된 국립학교의 설치와 직제에 관한 기본 근거라는 점과 국립학교는 문교부 장관의 관할에 속한다는 점을 밝히고, 이하에서는 각종 국립학교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즉, 제2장에서는 서울대학교를 포함하여 종합대학 수준의 국립대학교에 관한 규정을, 제3장에서는 1~2개의 학부로 구성된 국립대학에 관한 규정을, 제4장에서는 국립사범학교에 관한 규정을 그리고 제5장에서는 국립특수학교에 관한 규정을 실었다. 마지막 부칙에는 이 명령의 시행일자와 각급 국립학교의 개설일자, 현존 국립학교에 대한 조치 그리고 추가적인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는 규정 등이 포함되었다. 각 국립학교에 관한 규정이 공통적으로 명시한 내용은 수업연한, 부속시설(대학원, 연구시설 등), 부속학교, 교원직제, 학교조직, 그리고 담당업무 등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별표〉에는 1953년 당시 국립학교로 지정된 각급학교에 관한 정보를 첨부하였다. 〈별표1〉에서는 서울대학교,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등 4개 국립대학교, 〈별표2〉에서는 부산대학, 부산수산대학, 공주사범대학 등 3개 국립대학, 〈별표3〉에서는 서울사범학교, 인천사범학교, 제주사범학교, 충주사범학교, 대전사범학교, 공주사범학교, 전주사범학교, 군산사범학교, 광주사범학교, 목포사범학교, 순천사범학교, 안동사범학교, 대구사범학교, 부산사범학교, 진주사범학교, 춘천사범학교, 강릉사범학교 등 17개 국립사범학교, 〈별표4〉에서는 서울맹농학교를 제시하여, 총 25개 국립학교에 관한 정보가 실려 있다. 각 국립학교에 관한 정보는 학교명칭, 소재지, 소속 학부(또는 부), 설치 학과 순으로 되어 있다.

05 교육세법

관리번호 : 1A00614174532328
쪽　　수 : 141
생산년도 : 1958
생산기관 : 법제처

「교육세법」(1958. 8. 28, 법률 제496호)은 의무교육 확충을 위해 독립세를 신설하는 근거법률이다. 전문은 제1장 총칙(제1조～제9조), 제2장 과세표준 세율(제10조～제17조), 제3장 신고(제18조～제20조), 제4장 조사결정(제21조～제23조), 제5장 심사결정(제24조), 제6장 납부 징수(제25조～제32조), 제7장 잡칙(제33조～제38조) 그리고 부칙(5개 항)으로 되어 있다. 이 법률은 「교육법」에 규정된 교육자치제와 연계하여 시행되다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폐기되었다. 이 기록물의 앞부분에는 법제실장이 공보실장에게 보내는 법령공포 요청 공문, 대통령 재가 공문, 이승만 대통령 이하 국무위원의 공포 승인서, 법령 심의승인표 등이 있고, 「교육세법」이 첨부되어 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교육세법」 결정 과정의 각종 문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선 「교육세법」에 대한 정부(안)과 국회통과(안)의 중요 차이점에 관한 요약표가 있고, 그 다음에 법제실장이 국무원사무국장에게 보낸 '교육세법안 국회 제출의 건' 관련 공문, 교육세법(안) 및 제안설명, 심의경과표, 교육세법(안)에 의한 세수의 증가이유, 교육세법(안) 전문 및 제안설명 등이 수록되어 있다.

교육세의 신설은 「교육법」 제3장(교육세와 보조금)에 근거하였다. 제68조에는 "교육구·시 또는 특별시는 그 설립운영하는 초등학교와 그에 준하는 학교를 유지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교육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교육법」 제정 당시의 최대 현안은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초등교육의 의무교육화를 달성하는 일이었다. 이 때문에 시급히 의무교육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였고, 그 재원을 별도의 교육세를 신설하여 충당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법」 제정 직후, 6.25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논의는 추진되기 어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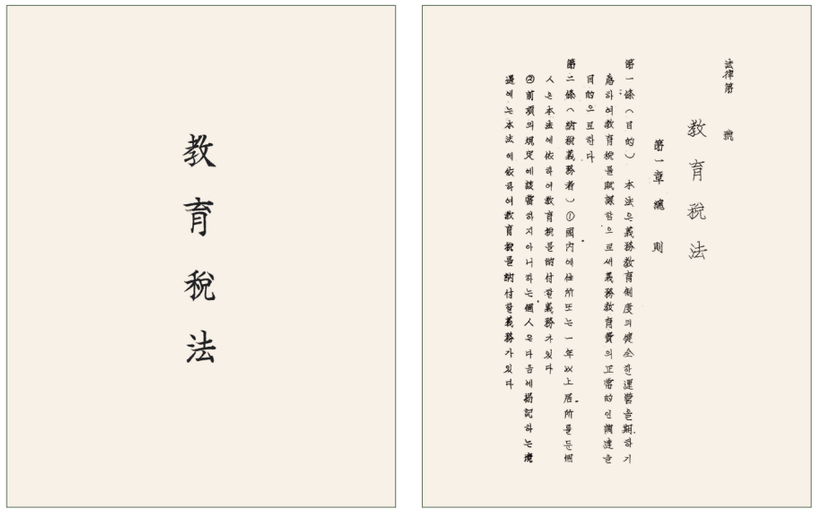
教育稅法

法律第號
教育稅法
第一章 總則
第一條（目的） 本法ハ義務教育制度ノ健全ナル運營ヲ期スル爲ニ教育稅ヲ賦課シ之ヲ以テ義務教育費ノ正常ナル目的ニ充テル
第二條（納稅義務者） ㊀國內ニ住所ヲ有シ又ハ一年以上居所ヲ置ク人ハ本法ニ依リテ教育稅ヲ納付スル義務ヲ負フ
㊁前項ノ規定ニ該當シナイ人ハ法人ニ對シテハ本法ニ依リテ教育稅ヲ納付スル義務ヲ負フ

【그림 5】〈교육세법〉 표지 및 내용 (1A00614174532328, 12,424쪽, 12,425쪽)

1952년 6월에 들어서야 교육자치제가 시행되었고, 그만큼 의무교육 확충에 관한 논의도 이후로 미루어 질 수밖에 없었다. 최초의 의무교육계획은 1954년부터 1959년까지 시행한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은 6.25전쟁으로 69.8%까지 떨어진 취학률을 1959년까지 96%로 높이는 데에 목표를 두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초기부터 재원 부족으로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였다. 단적인 예로 1차년도인 1954년의 교실 증설 계획은 5,924개였지만 실제로 증설한 교실수는 457개에 그쳤다. 4차년도인 1957년까지도 이러한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서 당초 6,269개의 교실을 증설하고자 했지만 2,923개만이 신축되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점차로 취학률은 증가하였지만, 학생을 수용할 교실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학급 과밀화 현상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초등학교의 학급수를 학년당 6학급 이하, 학급당 학생수를 60명 이하로 정한 「교육법시행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8년 6월부터 교육세법(안)을 심의하기 시작하여, 7월 19일 국회에 제출하고, 그 의결을 거쳐 8월 28일에 법률 제496호로 제정되었다. 「교육세법」 신설의 기본 취지는 '교육세법(안) 제안설명'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교육세는 "의무교육제도의 더욱 건전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교육비의 정상적인 조달방안

으로 … 창설"하는 것으로서, 현행의 일부 국고지원, 호별세부가금, 특별부과금, 학부형 직접 부담 등이 지역적인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갖는 교육세는 독립세로서 신설하고, 교육세를 국세인 교육세와 지방세인 지방교육세로 구분하였다. 국세로서의 교육세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개인 또는 법인의 소득액을 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지방세로서의 지방교육세는 교육세에서 부과하지 않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세의 징수는 서울특별시·시·읍·면에 위탁하도록 하고, 징수한 교육세의 300/1000은 해당 지역 교육자치단체에 직접 환부하고, 8/1000은 해당 자치단체에 교육세 징수비용으로 교부하도록 하였다. 나머지 세액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교육세가 의무교육을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확충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던 만큼, 문교재정에 귀속되어 교육시설 확충에 투입될 수 있었다. 실제로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은 5차년도인 1958년까지 취학률 92.5%에 머물러 원래의 계획을 달성하기 어려웠으나, 「교육세법」이 신설된 다음 해인 1959년에는 3,799,690명의 학령 아동 가운데 3,558,142명을 취학하도록 함으로써 96.4%의 취학률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것은 원래의 계획보다 0.4%로 상회하여 달성한 수치로서, 불과 1년 만에 취학률이 4.0%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것은 「교육세」의 신설이 1950년대 후반 교육정책의 최대 현안이었던 의무교육 확대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법률은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고, 그동안 시행하였던 시·군 단위의 교육자치제도가 폐지되면서, 교육세 징수와 교부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뀜에 따라 폐기되었다.

Chapter I

06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

관리번호 : 1A00614174536187
쪽　　수 : 49
생산년도 : 1961
생산기관 : 법제처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1961. 9. 1, 법률 제708호)은 1961년 5. 16 군사정변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주도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에서 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특례법이다. 전문은 총 22개 조문과 부칙 4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률은 「교육법」에 우선하여 효력을 가지고, 이와 저촉되는 조항은 모두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특례법에 의거하여 1961년 12월 9일에는 「학교설비기준령」이 제정되고, 1963년 6월 26일에는 「사립학교법」(법률 제1362호)이 제정되었다.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해체되고 제3공화국이 출범하면서, 1963년 12월 5일에 폐지되었다. 이 기록물 앞부분에는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 공포 승인 요청 공문, 윤보선 대통령 이하 내각의 법령 승인서,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안), 내각수반이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에게 보내는 법령 공포 통지서가 있고, 뒷부분에는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내각수반에게 보내는 법률 공포 요청 공문, 내각사무처장이 공보부 장관에게 보내는 법령 공포 요청 공문, 내각사무처장이 문교부 장관에게 보내는 법령 공포 통지 공문,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제출할 법률안 승인 요청 공문, 내각수반이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에게 보내는 법률안 심의 의결 요청 공문,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안) 및 첨부(주문, 제안이유, 법률안의 주요내용, 참고조문)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은 1961년 8월 11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같은 해 9월 1일 법률 제708호로 공포되었다. 이 특례법은 기존의 「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및 기타 교육관계법 보다 우위의 효력을 가지고, 특례법과 저촉되는 조항은 효력이 정지되었다. 사실상 교육 부분에 관한 한 최고의 위상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한 조치는 당시가 5. 16 군사정변에 따른 비상시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만큼 당시 교육 부분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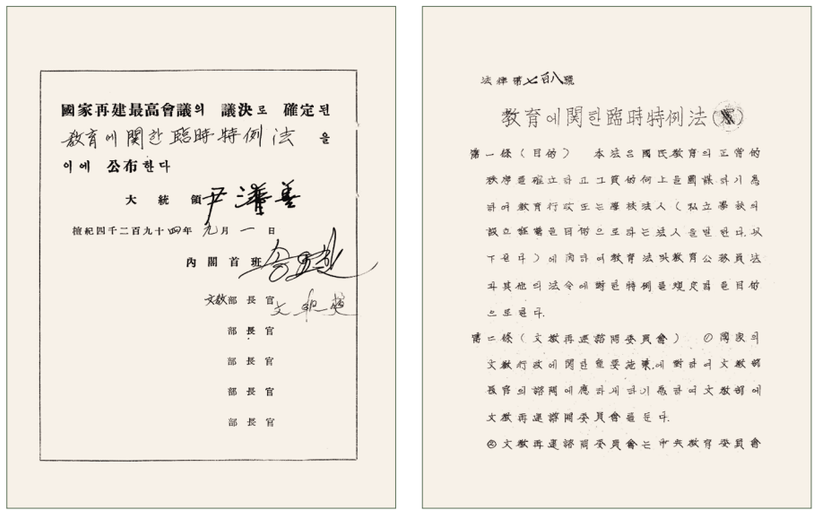
國家再建最高會議의 議決로 確定된
教育에 關한 臨時特例法 을
이에 公布한다
大 統 領 尹潽善
檀紀四千二百九十四年 九月 一 日
內 閣 首 班
文敎部 長 官
部 長 官
部 長 官
部 長 官
部 長 官

法律第七百八號
教育에 關한 臨時特例法
第一條(目的) 本法은 國民敎育의 正常的 敎學을 確立하고 그 質的 向上을 圖謀하기 爲하여 敎育行政 또는 學校法人(私立學校의 設立 經營을 目的으로 하는 法人을 말한다. 以下 같다)에 關하여 敎育法 및 敎育公務員法 과 其他의 法令에 特례를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二條(文敎再建諮問委員會) ① 國政의 文敎行政에 關한 重要施策에 對하여 文敎部 長官의 諮問에 應하게 하기 爲하여 文敎部에 文敎再建諮問委員會를 둔다.
② 文敎再建諮問委員會는 中央敎育委員會

【그림 6】〈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 표지 및 내용 (1A00614174536187, 4,855쪽, 4,856쪽)

국가재건최고회의에 법률안을 상정할 때의 '제안이유'를 보면, 표면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주로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즉 사립학교가 관련 법률을 적용을 받고 있지 않고, 일반 「민법」의 적용만 받고 있어서 "사립학교는 신성한 국민교육기관이라기 보다 모리와 치부의 시장으로 화하여 그 부패와 병폐는 그야말로 골수에 도달한 감이 있다"고 평할 정도로 부실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각 조문들은 사립학교에 관한 사항에 그치지 않고, 거의 전 영역에서 교육의 공공성 또는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사립학교와 직접 관련이 있는 조문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임명절차(제12조), 사립학교 교원의 해직명령(제13조),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승인취소(제17조), 임시이사회 선임의 특례(제18조) 등으로, 주 내용은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문교부의 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립학교에 대한 제한 조치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자치제의 중단, 교원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제재,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주도의 중앙집권적 문교행정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특례법 제7조(교육감의 임면절차)와 제8조(교육감의 교육위원회의 직무취급)는 교육자치제를 폐지한 이후의 교육감에 관한 조항으로서, 이 점은 법률안 제안시 제출한 '본 법안의 주요내용'에 직접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주요내용'의 5항에 "교육감의 임기제를 정지하고, 그 임명에 있어서는 종래 시행되던 교육위원회의 추천제를 폐지하였으며"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군단위 교육위원회부터 상향식으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던 방식에서 문교부 장관의 제청으로 임명하는 하향식 구성 방식으로 전환됨으로써, 「교육법」 제정 이후 시행되었던 교육자치제의 근간이 해체된 것이다.

또한 특례법 제14조에서는 교원의 노동운동 및 집단적 행위의 금지를 명시함으로써, 당시 확산되던 교원노조를 불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조치에 의해서 이후 상당 기간 동안 교원에게는 단결권 및 교섭권이 허용되지 않았고, 교사에 대한 통제는 한층 강화되었다. 그리고 제19조에서는 대학의 학사학위를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국가가 시행하는 학사자격고시를 시행하여 합격한 자에게 수여한다고 함으로써 대학교육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자 하였다. 이 조항은 현실성이 떨어져 1961년과 1962년 2회 시행한 후 중지되었다.

그러나 제3조에서 학교, 학과, 정원 등의 정비를 규정한 조문에서는 학교 및 학과의 설치와 폐지, 정원 결정 등에서 문교부의 명령을 받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운영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여전히 강하였다. 이처럼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은 교육자치제의 폐지와 학교에 대한 국가의 감독 강화를 강력하게 도입함으로써, 민주적 자치권을 지향하던 「교육법」의 구상이 중단되고, 국가 주도의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이 강화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이 특례법은 제3공화국의 시작과 함께 폐지되었지만, 특례법에 나타나는 국가주도적 교육정책의 주요 사항들은 「교육법」을 비롯한 교육관계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유지되었다.

07 학교정비기준령(안)

관리번호 : BA0084287
쪽　　수 : 29
생산년도 : 1961
생산기관 : 총무처

〈학교정비기준령(안)〉은 각급 학교 정비에 관한 규정으로, 1961년 11월 23일 각의에 부의한 법령심의 안건이다. 이 안건은 각의의 심의를 거쳐 1961년 12월 9일에 「학교정비기준령」(각령 제283호)으로 공포되었다. 이 기록물에는 법제처장이 내각사무처장에게 보낸 공문과 문교부 장관이 제출한 〈학교정비기준령(안)〉이 포함되어 있다. 〈학교정비기준령(안)〉의 전문은 제1장 총칙(제1조～제5조), 제2장 중학교 및 고등학교(제5조～제8조), 제3장 대학 및 대학교(제9조～제16조), 제4장 각종학교(제17조～제19조) 등 총 4개 장 19개 조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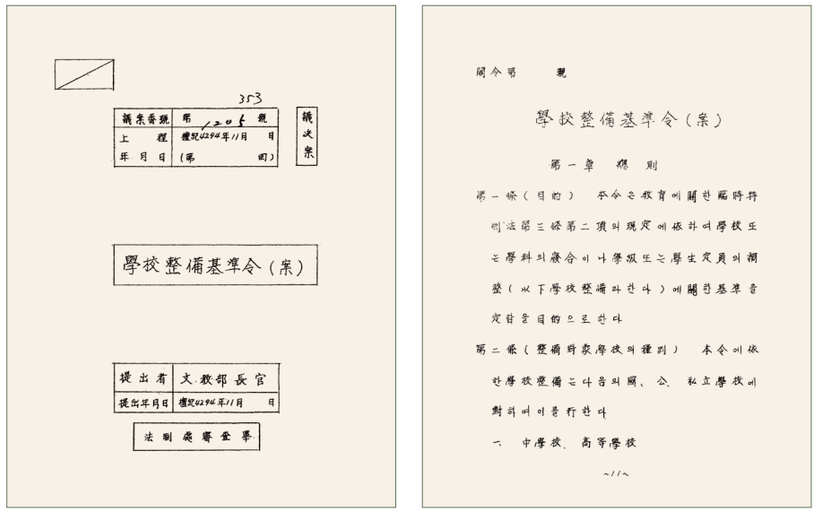
353

議案番號	第 206 號
上 程	檀紀4294年11月 日
年 月 日	(第 回)

議決案

學校整備基準令(案)

提出者	文敎部長官
提出年月日	檀紀4294年11月 日

法制處審査濟

閣令第　號

學校整備基準令(案)

第一章　總　則

第一條(目的)　本令은 敎育에 關한 臨時特例法第三條第二項의 規定에 依하여 學校 또는 學科의 廢合이나 學級 또는 學生定員의 調整(以下 學校整備라 한다)에 關한 基準을 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二條(整備時 來學校의 種別)　本令에 依한 學校整備는 다음의 國、公、私立學校에 對하여 이를 行한다

一. 中學校、高等學校

~//~

【그림 7】〈학교정비기준령(안)〉 표지 및 내용 (BA0084287, 855쪽, 865쪽)

1961년 5. 16 군사정변에 의해 민정은 중단되고,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운영하는 군정이 시작되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교육 부문의 부패를 청산하고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1961년 9월 1일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법률 제708호)을 공포하였는데, 주 내용은 각급 학교의 정비, 교육자치제 중단,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 교원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이었다. 이 가운데 각급 학교의 정비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3조(학교, 학과, 정원 등의 정비)에 규정되었는데, 그 2항에 "학교 또는 학과의 폐합이나 학급 또는 학생정원의 재조정에 관한 기준은 각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향후 이와 관련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였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공포한 직후, 우선적으로 대학정비를 시행함과 동시에 「학교정비기준령」의 제정에 착수하였다. 이미 시행한 대학정비의 법적 근거와 향후 시행할 각급 학교의 통폐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학교정비기준령」의 기본 취지는 각급 학교 및 학과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별 균형을 갖추도록 하는 데에 있었다. 이 때문에 이 법안에서는 학교정비를 위해 학교 급별로 지역별 단위를 규정하여, 정비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였다(제3조, 제4조). 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등은 특별시·시·군을 정비단위로 하고, 대학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2개 도(강원도와 제주도 제외)를 합하여 정비단위로 하였다.

이러한 학교 급별 정비단위를 기본으로 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폐합 기준은 단위지역 내에서 동급의 학교가 2개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경우, 그 가운데 재적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를 폐지하거나 통합하도록 하였다. 다만 지리적 조건으로 해당 학생이 다른 학교에 취학할 수 없거나, 사립학교로서 특수한 교육목적을 위해 설립된 학교 또는 기본재산수입이 소정의 기준을 충족시켜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었다(제5조).

대학 및 대학교의 정비기준은 국공립대학교의 경우 동일 지역 내에는 1개의 국공립대학교만 인정하고 나머지 국공립대학은 초급대학으로 개편하거나 통합 내지 폐지하고(제10조, 제11조), 사립대학의 경우는 소정의 학생정원(서울특별시 700명, 기타지역 600명)을 미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폐지하도록 하며(제12조), 초급대학의 경우는 「대학설치기준령」에 규정된 소정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폐지하도록 하였다(제13조). 이러한 학교 급별 정비기준은 일면 교육의 지역적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교육의 지역적 균등발전의 취지를 넘어서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는

데, 대표적인 예가 학과의 통폐합과 학생정원 조정에 관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조치는 대학교에 적용될 때 문제가 두드러진다. 이 법안 제15조에는 대학교나 대학을 막론하고 동일계 학과는 소정의 기준선을 넘어 중복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의 경우는 11개, 기타 지역은 6개를 초과하여 중복설치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제16조에는 전국 대학의 학생정원을 국가의 인적 수요와 설립자의 경비부담능력 및 국민의 교육비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문교부 장관이 책정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특정 학과의 수나 학생의 정원을 문교부에서 결정하도록 한 조치는 이후 대학정책의 주요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대학정책은 중앙집권적 성격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경제개발 우선주의로 인해 대학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Chapter I

08 사립학교법 공포(안)

관리번호 : BA0084370
쪽　　수 : 82
생산년도 : 1963
생산기관 : 총무처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안으로서, 1963년 6월 19일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사립학교법」(법률 제1362호)으로 제정되었다. 이 기록물은 1963년 6월 21일 내각사무처장이 의안으로 제출한 법률 공포(안)으로서, 여기에는 「사립학교법」 이외에 부속문건, 즉 의결주문, 제안이유, 참고자료 기타 등이 첨부되어 있다. 「사립학교법」의 전문은 제1장 총칙(제1조～제4조), 제2장 학교법인(제5조～제48조), 제3장 사립학교 경영자(제49조～제51조), 제4장 사립학교 교원(제52조～제69조), 제5장 보칙(제70조～제72조), 제6장 벌칙(제73조～제74조) 등 총 6개 장 74개 조문과 부칙(제1조～제4조)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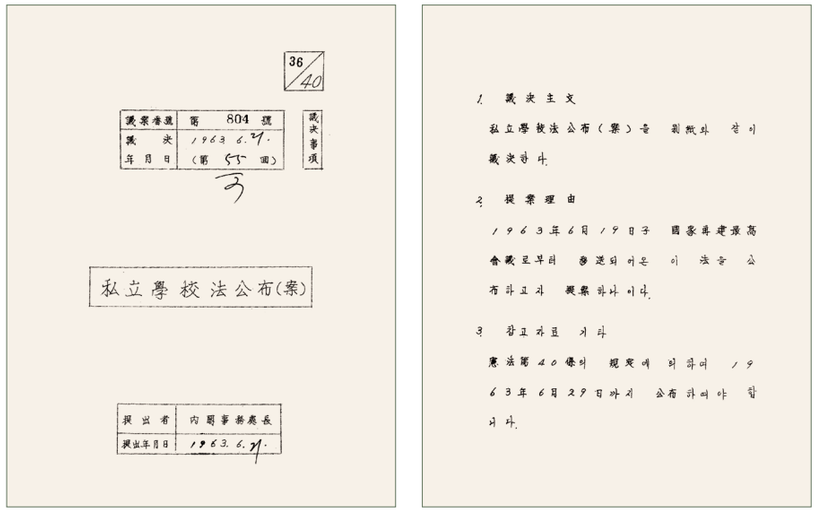
36/40

議案番號 第 804 號
議決年月日 1963. 6. 7. (第 55 回)
議決事項

私立學校法公布(案)

提出者 內閣事務處長
提出年月日 1963. 6. 7.

1. 議決主文
私立學校法公布(案)을 別紙와 같이 議決한다.

2. 提案理由
1963年6月19日子 國家再建最高會議로부터 參送되어온 이 法을 公布하고자 提案하는 바이다.

3. 참고자료 기타
憲法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1963年6月29日까지 公布하여야 할 바이다.

【그림 8】〈사립학교법공포(안)〉 표지 및 내용 (BA0084370, 52쪽, 53쪽)

1961년 5.16 군사정변에 의해 민정은 중단되고,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운영하는 군정이 시작되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교육 부문의 부패를 청산하고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1961년 9월 1일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법률 제708호)을 공포하였는데, 주 내용은 각급 학교의 정비, 교육자치제 중단,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 교원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이었다. 이 가운데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된 사항은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12조 사립학교 교직원의 임명절차부터 제18조 임시이사회의 특례까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까지 사립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관계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규정은 「민법」 조항을 원용하여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사립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였고, 더욱이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정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가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에 있었기 때문에 보다 정비된 「사립학교법」의 제정은 시급한 일이었다.

실제로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설립, 이사회, 교직원 등 사립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립학교법」의 특징은 기관의 공공성 제고, 운영의 안정성 확보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규정은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 설립 제한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학교의 종류를 제시하였는데, 그 대상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초급대학 포함), 사범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 각종학교(대학 또는 실업고등전문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되어 있어, 공민학교와 같은 몇 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오직 학교법인만이 사립학교를 설립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제4조에서 소재지 감독청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를 자의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이러한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을 국공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준하도록 하고, 임면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이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은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비록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사립학교법」을 제정하였지만, 교원에 대해서만큼은 국공립학교의 교원과 거의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 과정이 세부적인 절차에서 국공립학교 교원과 다를 수 있지만, 그 기본 정신은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교원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규정으로는 제2장 학교법인의 통칙에서 사립학교의 재산규정을 명문화한 것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학교법인은 해당 사립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설비와 학교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입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당시 열악한 사립학교의 재정 문제를 보완하는 조치도 포함시켰다.

그리고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재산과 회계'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여, 사립학교의 재산관리, 예산의 구분,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의 제출, 재산목록 등의 비치, 예산편성 요령 및 회계규칙 등을 명시함으로써, 사립학교 재정 운영방식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09 산업교육진흥법

관리번호 : 1A00614175008896
쪽　　수 : 53
생산년도 : 1963
생산기관 : 법제처

「산업교육진흥법」은 산업교육을 강화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1963년 9월 19일 법률 제1403호로 제정되었다. 이 기록물 앞부분에는 「산업교육진흥법」 공포승인 요청 공문, 공포 승인서, 산업교육진흥법(안), 공포통지 공문, 법제처장이 공보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포 요청서, 문교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포 통지서, 뒷부분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내각수반에게 보내는 심의결과 통지 공문, 국가재건최고회의 심의안건 제출 공문, 국가재건최고회의 심의 법률안, 〈표〉 1963년도 산업교육비 국고부담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산업교육진흥법」 전문은 제1장 총칙(제1조～제7조), 제2장 산업교육심의회(제8조～제13조), 제3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제14조～제20조) 등 총 3개 장 20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다.

광복 이후 최대의 교육 현안은 「헌법」과 「교육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을 완수하는 일이었다. 이 때문에 교육재정의 대부분이 의무교육을 양적으로 확대하는데 투입되었고, 다른 교육 부분에 대한 투자는 미약하였다. 특히 전통적으로 사회적 위상이나 관심이 낮았던 실업교육 분야가 심했다. 그러나 1954년부터 추진된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이 거의 완료되던 1958년부터 '실업기술교육 5개년 계획'이 추진되고, 또 한편으로는 '실업교육진흥법(안)'을 마련하여 실업교육의 시설과 운영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산업교육진흥법」은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산업분야의 유능한 기술인재를 양성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법안의 제안 이유에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행 중에 있는 현금의 우리나라 실정에 있어서는 종래와 같은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산업교육정책으로써는 도저히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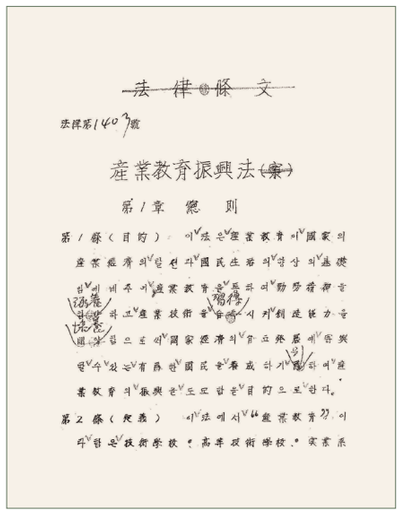
法律第1403號

産業教育振興法(案)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産業教育이 國家의 産業經濟의 발전과 國民生活의 향상의 基礎임에 비추어 産業教育을 振興하고 이에 勤勞精神을 함양하고 産業技術을 습득하게 하여 技術能力을 배양함으로써 國家經濟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과 아울러 國民을 육성하기 위하여 産業教育의 振興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産業教育"이라함은 技術學校, 高等技術學校, 産業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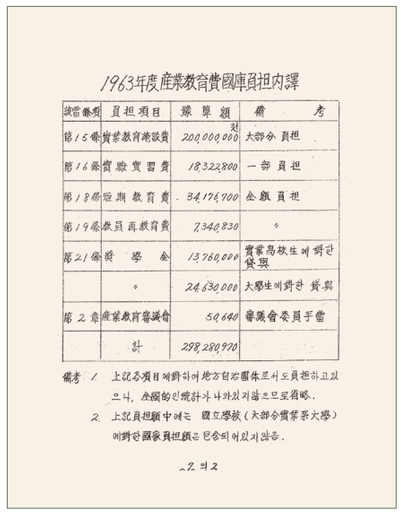
1963年度産業教育費國庫負担内譯

該當條項	負担項目	豫算額	備考
第15條	實業教育補助費	200,000,000	大部分 負担
第16條	實驗實習費	18,322,800	一部 負担
第18條	短期教育費	34,174,700	全額 負担
第19條	教員再教育費	7,340,830	〃
第21條	奬學金	13,760,000	實業高校生에 對한 貸與
	〃	24,630,000	大學生에 對한 貸與
第2章	産業教育審議會	50,640	審議會委員手當
	計	298,280,970	

備考 1. 上記各項目에 對하여 地方自治團体로서도 負担하고있으나, 全國的인 豫算가 나와있지않으므로 省略.
2. 上記負担額中에는 國立學校(大部分 實業系大學)에 對한 國家負担額은 包含되어있지않음.

-2 의 2

【그림 9】〈산업교육진흥법〉 표지 (1A00614175008896, 11,886쪽)

【그림 10】 1963년도 산업교육료 국고부담 내역 (1A00614175008896, 11,934쪽)

가 필요로 하는 질과 양의 기술계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라고 한 것은 당시의 문제의식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산업교육진흥법」은 당시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산업교육 정책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얻으려는데 근본 취지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본 취지에서 '산업교육진흥책'의 주요 내용은 산업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강화와 산업교육의 질 제고로 요약된다. 우선 산업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명시하여 중앙과 지방에 산업교육심의회를 설치함과 동시에,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재정배분을 효율화하는 조치가 주목된다. 1963년도 '산업교육비 국고부담내역'을 보면, 관련 예산을 실업교육시설비, 실험실습비, 단기교육비, 교육재교육비, 장학금, 산업교육심의회 별로 구분하고, 각 항목을 「산업교육진흥법」의 관련 조항과 연계시켜 배정하였다.

다음으로 산업교육의 질 제고 방안은 실과교원의 자질 강화와 실업계 교육과정의 강화 조치가 주목된다. 이 법안에서는 실과교원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현직교육을 강화하고 그 필요 경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것을 명문화하였다. 또한 실업계 학교의 교육과정을 강화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기존에

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고, 고등학교 전체 교육과정의 틀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문교부령 제112호)이 별도로 제정된 것은 「산업교육진흥법」이 제정되기 직전인 1963년 2월 15일이었지만, 여전히 전문교과의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전문교과 30% 이상, 일반과목 70% 이하). 그러나 「산업교육진흥법」이 제정된 다음 해인 1964년부터는 실업계 전문교과의 비중을 30%에서 50%로 강화하고, 전문교과 영역에서도 실습의 비중을 높여 60% 이상을 배정하도록 하였다. 특히 공업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전문과목의 비중을 더욱 강화하여 전체의 55%이상을 배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의해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은 점차 강화되었고, 사회적 인식도 제고되었다. 그 결과 1963년 당시에는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수 비율이 58.7%와 41.3%로 인문계 학생의 비중이 높았지만, 1969년에는 47.4%와 52.5%로 역전되어 오히려 실업계 학생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재정지원도 크게 증가하여 문교재정의 0.8% 미만이었던 수준에서 3.0%까지 증가되었다.

Chapter I

10 국민교육헌장(가칭)

관리번호 : BG0000599
쪽　　수 : 46
생산년도 : 1968
생산기관 : 총무처

국민교육헌장은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명의로 국민에게 선포한 교육 헌장이다. 국민교육헌장 제정 사업은 1968년 6월 15일 민족 주체성 확립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국민교육의 방향을 정립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되었고, 문교부가 주축이 되어 1968년 10월경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수정과정을 거쳐 최종안이 마련되고 1968년 11월 26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반포되었다. 이 기록물은 문교부가 초안을 마련하여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였을 때의 자료이다. 주요 내용은 국민교육헌장 제정의 의의, 체제와 내용, 작업과정, 구현시책, 선포 방식 등 5개 장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 국민교육헌장 초안이 첨부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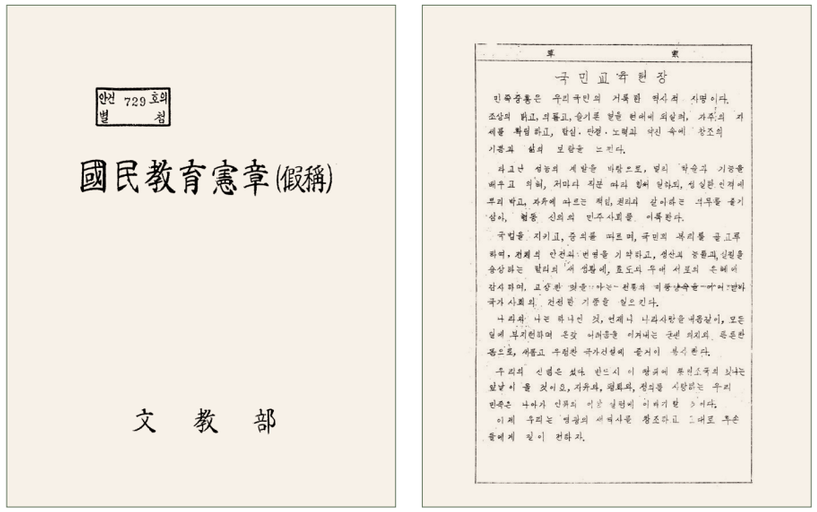

【그림 11】〈국민교육헌장(가칭)〉 표지 및 내용 (BG0000599, 425쪽, 470쪽)

국민교육헌장의 제정에는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이 기록물 제1장 국민교육헌장 제정의 의의에서는 새로운 교육장전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는데, 그 요점은 국민의 가치관이 혼란하고 통일성이 부재하여 국가발전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민족 주체성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국민상을 정립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배경에는 1968년 1월 21일 북한 특수공작원의 청와대 기습 사건, 이른바 1.21 사태가 발생한 것이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21 사태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확인시키는 사건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체제 통합적 의식 강화가 강하게 요구되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1962년부터 추진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과정에서 저임금 노동이 확산되고, 이에 따른 노사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사회적 갈등을 낳고 있었다. 당시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1971년)이 강력하게 추진되던 상황으로서, 노사 갈등은 경제발전 계획 추진에 장애로 여겨졌다. 따라서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공동 운명체로서의 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문교부는 1968년 6월 15일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직후, 초안작성준비회를 구성하여 3회 정도 회의를 하였고, 전문분야별 작성자, 종합검토자, 초안작성자를 선정하여 초안작성에 들어갔다. 7월에는 40인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구성하여 10월까지 총 6회의 심의회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국민교육헌장 제정 과정에서 참고한 자료는 크게 두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내용적인 측면의 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자료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자료는 피히테의 『독일국민에게 고함』(1807), 그룬트비히의 '국민고등학교운동'(1844), 일본의 '교육칙어'(1890.10.30), 그리고 「대한민국헌법」 전문과 '3.1독립선언서'였다. 그리고 형식적인 측면에서 참고한 자료는 앞의 자료 이외에 프랑스의 '인권선언', 영국의 '권리장전', 미국의 '독립선언', '세계인권선언' 등이 포함되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내용적인 측면이나 형식적인 측면에서 많이 참고한 자료는 일본의 '교육칙어'였다. '교육칙어'에 대해서는 "일본가치관을 확립하고 혼란한 국민정신을 통일하였으며 제2차대전 패전시까지 교육의 기본이념이 되었다"고 평함으로써, 이 칙어가 일본 근대화 과정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강조하고, 그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또한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여타 자료의 형식이 전문·본문·조문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글자 수도 수 천자 이상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본문(330자) 중심으로 작성된 '교육칙어'의 형식을 수용하였다.

국민교육헌장 제정 이후 확산 방안은 크게 3가지로 계획되었는데, 첫째는 학교교육을 통한 집중 교육이고, 둘째는 성인교육을 통한 양적 확산이며, 셋째는 일상생활에서의 홍보 강화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각급 학교 교과서에 국민교육헌장 전문을 싣거나 국민교육헌장의 이념과 내용을 교과내용에 편입시키게 되었고, 국민교육헌장 구현을 위한 장학자료를 작성하여 학교교육을 지도하게 하였다. 성인교육의 측면에서는 성인교육용 교재를 별도로 편찬하고,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체의 각종 시험에 국민교육헌장에 관한 문제를 출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생활과정에서는 홍보용 자료를 간행하고, 마을문고 등을 활용하여 보급하였으며, 각종 행사에서 국민교육헌장을 낭독하는 절차를 의무화하였다.

정부에서는 국민교육헌장을 대대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각 부처의 협력도 강화하였는데, 총무처에서는 공포일을 '교육의 날'로 정하도록 하였고, 문화공보부에서는 각종 계몽보급 활동을 주도하였으며, 경제기획처에서는 이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배정하였다.

국민교육헌장은 1970년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과 연계되고, 1972년 10월 17일 이른바 「유신헌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유신교육과 연계되어 더욱 강조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도 국민교육헌장을 통한 국민정신교육은 지속되었지만, 1990년대부터 점차 약화되어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폐지되었다.

11 교육기본법

관리번호 : 1A00614174640009
쪽　　수 : 37
생산년도 : 1997
생산기관 : 법제처

「교육기본법」은 국민의 교육에 관한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교육 관계 기본법이다. 이 법은 1997년 12월 13일에 법률 제5437호로 제정되었다. 전문은 제1장 총칙(제1조～제11조), 제2장 교육담당자(제12조～제17조), 제3장 교육의 진흥(제18조～제29조) 등 총 3개 장 29개 조문과 부칙 4개 조로 되어 있다. 이 기록물에는 법안 공포 승인서, 법안 공포 승인 요청 공문, 교육기본법(안), 관보 게재 요청 공문 및 참고사항, 국무회의 의결 결과 공문 및 교육기본법(안), 국회 법률안 제출 공문, 국회 법률안 제출 승인 공문, 의결주문 및 교육기본법(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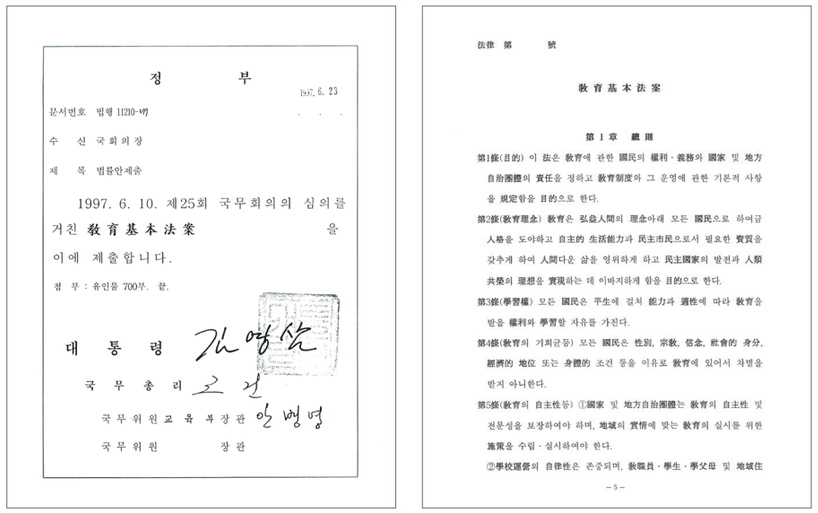
정　　부

1997. 6. 23

문서번호 법행 11210-97

수　신 국회의장

제　목 법률안제출

1997. 6. 10. 제2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敎育基本法案** 을 이에 제출합니다.

첨 부 : 유인물 700부. 끝.

대 통 령

국 무 총 리

국무위원교육부장관

국 무 위 원　　장 관

法律 第　　號

敎育基本法案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敎育에 관한 國民의 權利·義務와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任을 정하고 敎育制度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敎育理念) 敎育은 弘益人間의 理念아래 모든 國民으로 하여금 人格을 도야하고 自主的 生活能力과 民主市民으로서 필요한 資質을 갖추게 하여 人間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民主國家의 발전과 人類共榮의 理想을 實現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3條(學習權) 모든 國民은 平生에 걸쳐 能力과 適性에 따라 敎育을 받을 權利와 學習할 자유를 가진다.

第4條(敎育의 기회균등) 모든 國民은 性別, 宗敎, 信念, 社會的 身分, 經濟的 地位 또는 身體的 조건 등을 이유로 敎育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第5條(敎育의 自主性등)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敎育의 自主性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地域의 實情에 맞는 敎育의 실시를 위한 施策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學校運營의 自律性은 존중되며, 敎職員·學生·學父母 및 地域住

－5－

【그림 12】〈교육기본법〉 표지 및 내용 (1A00614174640009, 301쪽, 307쪽)

「교육기본법」은 1949년 12월 31일 제정된 「교육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헌법에 보장된 교육에 관한 기본권을 구체화하고, 학교급, 설립주체, 교육영역을 망라하는 기본원칙과 이념을 제시하는 교육 관련 기본법이다. 당시까지는 「교육법」에 이와 관련된 규정을 포함시켜 시행해 왔지만, 제정 이후 50년이 흐르면서 법의 기본적인 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즉 교육정책의 추진과정에서 38차례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수시로 법조문이 개정되거나 삭제되고, 더욱이 중복된 규정이 반복되는 문제까지 나타났다. 또한 그동안 교육제도나 교육여건이 크게 변화하였음에도, 그러한 변화를 「교육법」에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었다.

특히 1991년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어, 「교육법」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관련 조항이 전면 삭제되어, 법 체제의 일관성은 더욱 약화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존의 「교육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교육기본법」은 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과 이념을 제시하고, 학교급별 세부적인 내용이나 사회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정하도록 한 것이다.

법안의 제안 이유에서도 이 점을 명시하여 "평생학습사회, 열린 교육사회의 구현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현행 교육법을 교육기본법 등 3개의 법률로 구분하여 새롭게 제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교육기본법」의 주요 골자로는 8개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습할 자유가 있음(제3조), 둘째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음(제5조 2항), 셋째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을 유지·발전시키고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함(제9조 2항), 넷째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며, 사회교육의 이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함(제10조), 다섯째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제12조), 여섯째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을 교육할 권리와 책임이 있으며,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제13조), 일곱째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설립 경영하는 자는 교육을 위한 시설 및 교원 등을 확보하도록 하며, 학교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습자를 선정·교

육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여덟째 국가는 국민의 학습과정 등이 공정하게 평가되어 통용될 수 있도록 학력평가 및 능력인정제도를 수립·실시하도록 함(제26조 제1항) 등이다.

이러한 「교육기본법」의 제정으로, 교육 관련 법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학교교육법과 「사회교육법」 등 사회교육법으로 구분되는 이른바 교육 3법 체제로 재구조화 되었다. 이러한 교육 3법 체제는 이미 1949년 3월 국회에 상정된 교육법(안) 가운데 정부(안)에도 반영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교육에 관한 기본 원칙과 이념은 「헌법」에 수록되어 있다는 점과 교육 3법 체제가 일본의 교육법 체제와 유사하다는 이유에서 수용되지 못하고 단일법으로서의 「교육법」으로 출발하였다. 이 점에서 「교육기본법」의 제정은 광복 이후 양적으로 확대되고, 보다 다양해진 교육상황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는 과정에 나타난 부득이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의 이념과 기본원칙을 「교육기본법」에 분리하여 규정하고, 학교교육법과 사회교육법을 분립시킴으로써 변화된 교육환경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 체제의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Chapter I

12 교육제도심의회 규정(안)

관리번호 : BG0000406
쪽　　수 : 10
생산년도 : 1964
생산기관 : 총무처

「교육제도심의회 규정」은 문교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교육제도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다. 자문의 주요 내용은 학제와 입시제도에 관련된 사항이다. 이 기록물은 1964년 3월 6일 문교부 장관이 제출한 〈교육제도심의회 규정(안)〉이다. 규정(안)은 총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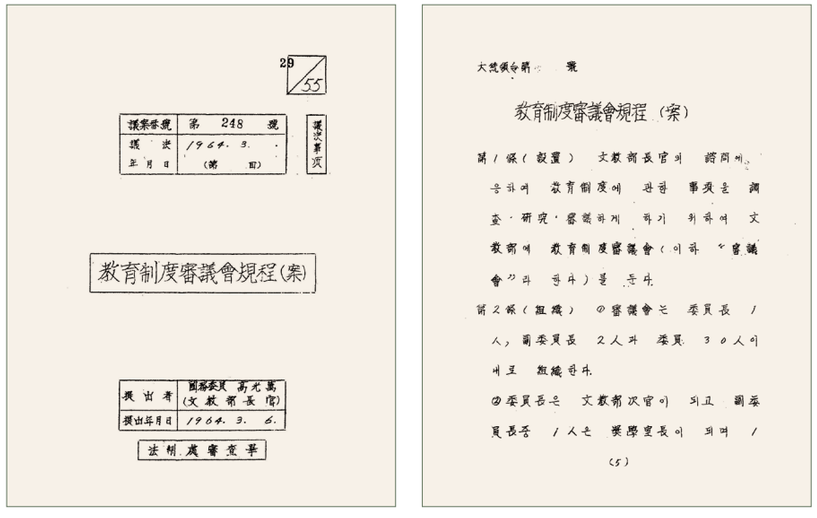
教育制度審議會規程(案)

提案番號 第 248 號
提出年月日 1964. 3.
(第 回)

提出者 國務委員 高光萬 (文敎部長官)
提出年月日 1964. 3. 6.

法制處審査畢

大統領令第 號

教育制度審議會規程 (案)

第1條(設置) 文敎部長官의 諮問에 응하여 敎育制度에 관한 事項을 調査·硏究·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文敎部에 敎育制度審議會(이하 "審議會"라 칭함)를 둔다.

第2條(組織) ①審議會는 委員長 1人, 副委員長 2人과 委員 30人이내로 組織한다.

②委員長은 文敎部次官이 되고 副委員長중 1人은 學事局長이 되며 1

(5)

【그림 13】〈교육제도심의회 규정(안)〉 표지 및 내용 (BG0000406, 536쪽, 540쪽)

광복 이후 학제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일제 강점기부터 지속되었던 학제와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6-3-3-4제의 단선형 학제가 충돌하였고, 그 사이에 여러 제안들이 있어 왔다. 결국 1949년 12월 31일에 제정된 「교육법」에서는 단선형 학제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국민학교 6년, 중학교 2~4년, 고등학교 2년, 대학 및 대학교 4년

을 기본으로 하는 절충(안)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절충(안)은 곧바로 개정되어, 1950년 3월 10일 단선형 6-3-3-4제를 기본으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학제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다가, 1960년대에 들어 학제 개편에 관한 논란이 다시 시작되었다. 1961년 9월 1일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법률 제708호)의 제정으로 2년제 교육대학이 신설되었고, 1963년 8월 7일 5년제 실업고등전문학교제를 창설(법률 제1387호)하여 중학교 졸업자를 입학 자격으로 하는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1963년 8월에는 「교육법」을 개정하여 사범학교를 폐지하고, 사범대학을 4년제로 통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기존의 학제를 근본적으로 문제삼을 만큼 큰 변화는 아니다. 오히려 당시 학제의 문제는 같은 해 9월 19일에 제정된 「산업교육진흥법」(법률 제1403호) 이후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의 영향이 컸다고 판단된다.

〈교육제도심의회 규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현행의 학제가 "일반 국민의 여론과 교육계의 총의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하는 일이 허다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문계 위주의 학제 운영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입시교육이 팽배하고, 그 와중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실업교육에 대한 관심이 낮은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교육제도심의회를 설치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당시 언론에서 '교육제도심의회에 붙인다'는 사설(「동아일보」, 1963. 2. 4)을 통해 "생산인양성과 실업교육을 내세우고 있지마는 이러한 인간상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과연 학제 때문이냐 운영 때문이냐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실제로 교육제도심의회는 학제분과위원회와 입시제도분과위원회로 구성되고, 이 분과회의 역할은 종래의 학제와 입시제도에 대한 연구 및 개선(안)에 관한 자문이었다. 이러한 교육제도심의회의는 문교부 차관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문교부 장학실장과 심의회에서 호선된 위원 2인이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30인 이내로 구성되었다. 이후 학제개편에 관한 논의는 학제개편추진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여기에서 각계의 의견을 모아 6-5-4제, 5-5-3-3제, 6-5-2-3제, 6-6-4제, 5-7(4-3)-4제 등 5개의 개편을 중심으로 학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1965년 학제개편추진위원회는 동일계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통합, 단설 중학교의 실업학교로의 개편, 설비가 미비한 실업고등학교의 경우 설비를 갖출 때까지 실업중학교로 유지 등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제출하여 1966년부터 시행하려고도 하였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기존의 6-3-3-4제의 기본 골격을 크게 변화시키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처럼 교육제도심의회는 학제 개편과 관련하여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현행 학제의 문제점과 개선(안)에 관한 논의를 촉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또한 학제와 입시제도 두 영역에 그치기는 하지만, 문교부 장관의 자문기구로서 현행 교육문제를 연구하고, 개선(안)을 제출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던 것도 이후 각종 교육정책 자문기구의 초기 사례로서도 의미를 갖는다.

13 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회 규정

관리번호 : 1A00614175015017
쪽　　수 : 13
생산년도 : 1968
생산기관 : 법제처

「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회 규정」은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다. 심의회의 주요 활동은 교육 분야의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자문하는 일이다. 「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회 규정」은 1968년 11월 30일에 대통령령 제3651호로 공포되었다. 이 기록물에는 심의회 규정 공포 승인 요청 공문, 공포 승인서, 「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회 규정」, 심의회 규정 관보게재 요청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심의회 규정은 총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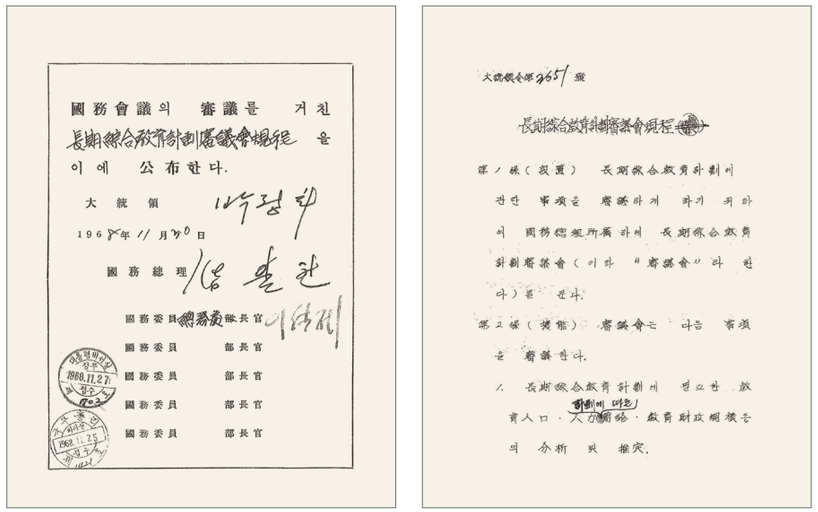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친
長期綜合敎育計劃審議會規程을
이에 公布한다.
大統領
1968年 11月 30日
國務總理
國務委員 部長官
國務委員 部長官
國務委員 部長官
國務委員 部長官
國務委員 部長官
大統領令第3651號
長期綜合敎育計劃審議會規程
第1條(設置) 長期綜合敎育計劃에 관한 事項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國務總理所屬하에 長期綜合敎育計劃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第2條(機能) 審議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한다.
1. 長期綜合敎育計劃에 필요한 敎育人口·人力需給·敎育財政規模 등의 分析 및 推定.

【그림 14】〈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회 규정〉 표지 및 내용 (1A00614175015017, 46,166쪽, 46,167쪽)

1960년대 중반 이후 교육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기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이 시기에는 의무교육이 완성되고, 중등교육도 급속히 팽창하였다. 1969년에 중학교 무시험 제도가 시행된 것도 이러한 변화에 따른 것이다. 또한 1962년부터 추진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실업교육을 강화하고 우수한 기술인을 양성하는 문제도 중요한 현안이었다.

이 때문에 1967년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작과 함께, 과학기술교육 5개년 계획(1967~1971)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주로 산업 부문별 인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주안점이 있었다. 그러나 곧이어 보다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교육발전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에 따라 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회가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조직되었다. 심의회 규정의 제안 이유에서 "국가발전계획의 일환으로서 교육의 제도, 내용, 재정, 시설과 교원수급 등에 관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심의"하는 데에 있다고 한 것은 이 점을 드러낸 말이다. 실제로 심의회 규정 제2절에서는 심의회의 기능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범위는 이전의 자문기구에 비하여 교육의 전반적인 사항에 걸쳐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장기종합교육계획에 필요한 교육인구, 인력계획에 따른 수급, 교육재정 규모 등의 분석 및 추정, 둘째 교육제도, 교육과정, 교원수급, 교육재정, 교육시설 등의 개선 또는 확보에 대한 계획, 셋째 보통교육, 고등교육, 과학기술교육 사회교육 등의 분야별 교육계획, 넷째 기타 장기종합교육계획에 필요한 사항 등 거의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부위원장은 문교부 장관으로 함으로써 심의회의 위상을 이전 자문기구에 비하여 높여 그 정책적 영향력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위원은 각계 인사로 구성하되 45인 이내로 하고, 필요에 따라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 교육 분야의 전문 연구자 약간 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료수집·조사·분석·연구 활동을 주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직구성은 각계 인사로 구성된 위원을 통해 심의활동의 확산성을 기하고, 교육 전문 연구자로 구성된 전문위원을 통해 연구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심의회 규정(안)이 1968년 11월 30일 대통령령 제3651호로 제정됨에 따라, 1969년 2월 13일 각계 인사 50인의 위원과 10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장기종

합교육계획심의회가 설치되었다. 동 심의회는 1969년부터 1972년까지 3년 간 활동하면서 향후 15년에 걸친 장기교육계획(안)(1972～1986)을 마련하였는데, 이 교육계획(안)은 최초의 교육개혁 작업으로 평가된다. 이 계획은 사회의 발전 추세와 전망, 교육 부문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분석 등을 기반으로 하면서 부문별 장기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교육 부문은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실업교육, 교원교육, 취학전 교육, 해외교육, 특수교육, 학교외 교육, 통일교육 등 10개로 구분하고, 각각 학생, 교원교육 방안, 시설, 행정, 재정 등 6개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이 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1971년 7월 22일 「교육정책심의회 규정」(대통령령 제5717호)이 제정되었고, 1971년 9월에 후속 기구로서 교육정책심의위원회가 발족하였다. 또한 1972년 8월에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설립되어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등에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장기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전문기구로 운영되었다. 이 점에서 '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회'는 1970년대 이후의 교육정책 자문기구와 한국교육개발원을 위시한 교육정책전문연구기관을 낳은 산파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Chapter I

14 교육정책심의회 규정(안)

관리번호 : BG0000735
쪽　　수 : 11
생산년도 : 1971
생산기관 : 총무처

「교육정책심의회 규정」은 교육정책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1971년 7월 22일 대통령령 제5717호로 제정되었다. 교육정책심의회는 교육정책 및 교육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을 연구 심의하여 문교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 기록물은 1971년 7월 12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교육정책심의회 규정(안)〉이다. 여기에는 법제처장이 총무처 장관에게 보내는 국무회의 부의 안건 제출 공문, 〈교육정책심의회 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규정(안)은 총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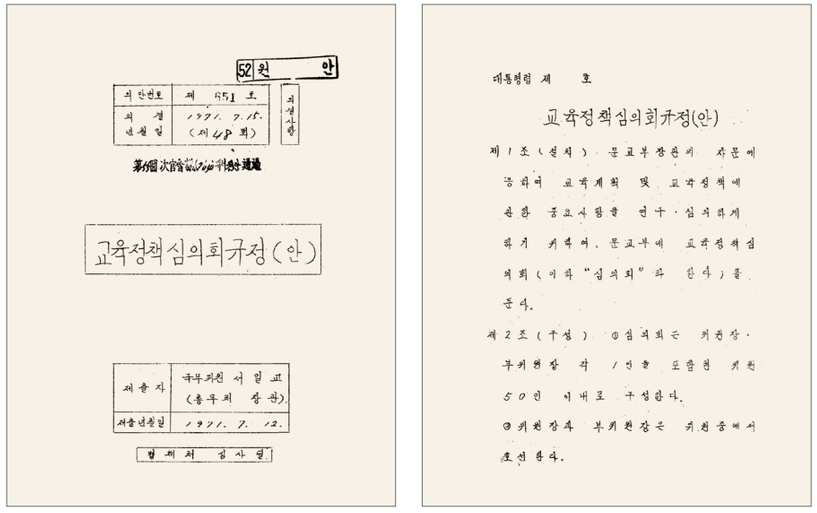
52 원 안

교육정책심의회규정(안)

대통령령 제 호

교육정책심의회규정(안)

제1조(설치) 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교육계획 및 교육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연구·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교육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그림 15】〈교육정책심의회 규정(안)〉 표지 및 내용 (BG0000735, 679쪽, 683쪽)

1969년에 국무총리 자문기관으로 설립된 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회는 1970년 12월 향후 15년 간의 '장기종합교육계획(1972～1986)'을 완성하여 제출하였다. 이 계획(안)

은 공식적인 정부계획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장기교육계획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교육정책 실무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플로리다대학 연구팀이 내한하여 중앙교육연구소와 협력하면서 교육 부문에 관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1971년 4월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 보고서에는 새로운 교육체제의 연구 개발의 필요성과 중등교육단계의 직업교육 개편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었다.

당시 문교부는 플로리다대학 연구팀의 제안에 공감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그 시도는 1971년 7월 민관식 문교부 장관이 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회, 대학교육연구회, 교육연구심의회 등 서로 구분되어 있었던 기구들을 통합하여 교육정책심의회를 신설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구상을 바탕으로 7월 22일 「교육정책심의회 규정」(대통령령 제5717호)이 제정되었고, 8월 26일에는 각계 인사 50명의 심의위원을 선정하였다. 심의회에는 의무교육분과위원회, 중등교육분과위원회, 고등교육분과위원회를 두고, 필요에 따라 다른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직구성은 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회의 계획(안)이나 플로리다대학 연구팀의 제안에 따라 교육체제 개혁과 관련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심의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교육정책심의회는 조사 연구 기능보다는 정책 제안 심의 기능에 치중되었고,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연구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연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6조 1항). 이러한 내용은 당시 문교부가 새로운 교육연구기관의 설립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교육개혁심의회 규정」이 공포된 직후인 1971년 11월 30일에 문교부 장관은 새로운 교육전문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책임자를 선발하고, 기관 창설을 서두르도록 독려하였다. 이에 따라 창설된 연구기관이 1970년대부터 교육의 장기계획수립, 기초 조사 연구, 정책 현안 연구를 주도한 한국교육개발원(KEDI,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이다.

원래 한국교육개발원은 1972년 4월에 개원할 예정이었지만, 몇몇 반대에 부딪쳐 지연되다가, 8월 31일에 개원하게 되었다. 한국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은 기본사업으로서 ①교육이념과 목적의 재정립, ②교육과정 개편, ③교과서 및 학습자료의 연구·개발, ④수업 및 학교 경영체제 개편과 시범, ⑤전국 대상의 교육방송망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제작·방영, ⑥교사교육 연구 및 실시, ⑦교육정보 센터의 설치·운영, ⑧사회교육체제의 확충, ⑨종합적 교육발전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사업 내용은 당시로서는 교육 부분의 전 영역을 망라하고, 기초 조사, 사업 시행, 정책 제안 및 장기적 종합적 교육발전 계획 수립 등 다양한 수준의 활동을 포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교육정책심의회는 새로운 단계의 교육정책 자문조직을 구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심의기능과 연구기능이 혼합되었던 기존의 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회와는 달리, 교육정책심의회는 교육정책의 심의와 자문에 집중하되 심의회의 활동에 기초가 되는 전문적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과 같은 전문적인 연구기관에 위임하는 운영방식을 취하게 되었다. 이것은 1970년대 이후 교육정책이 보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배경으로 수립되고, 보다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15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

관리번호 : BA0084715
쪽　　수 : 17
생산년도 : 1973
생산기관 : 총무처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은 1972년 8월 30일에 개원한 한국교육개발원의 법률적 지위와 경제적 지원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에서, 1973년 3월 14일 법률 제2616호로 공포되었다. 전문은 총 9개 조문과 부칙 2개 항으로 되어 있다. 이 기록물에는 법률 공포 승인 요청 공문, 공포 승인서,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안), 관보 게재 요청 공문, 법률안 제출 공문 등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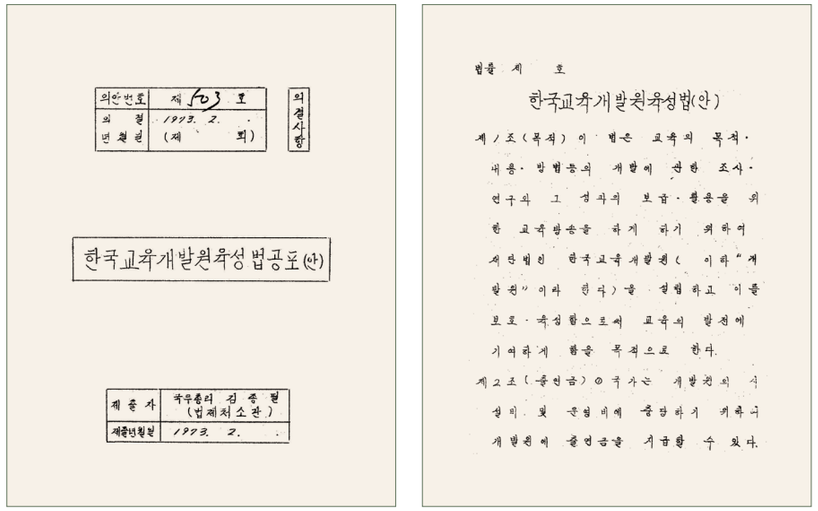
의안번호 제 103 호
의결 1973. 2. .
번호 (제 회)
의결사항
한국교육개발원육성 법공포(안)
제출자 국무총리 김종필 (법제처소관)
제출년월일 1973. 2. .

법률 제 호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목적·내용·방법등의 개발에 관한 조사·연구와 그 성과의 보급·활용을 위한 교육방송을 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에 한국교육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이를 보호·육성함으로써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연금) ① 국가는 개발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림 16】〈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 표지 및 내용 (BA0084715, 378쪽, 380쪽)

한국교육개발원은 1970년대 이후 교육 부문의 전문적이고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기관이다. 또한 이후의 각종 교육전문기관인 교육방송, 교육과정평가원 등의 산실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이전에는 1953년 3월 9일에 설립한 중앙교육연구소가 이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한국교육개발원이 신설됨으로써 교육전문연구기관의 역할이 한층 강화되었다.

기존의 중앙교육연구소가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전환된 데에는 교육발전계획 수립에 보다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들어 있었다. 그 계기는 크게 2가지였는데, 하나는 1970년 12월에 제출한 '장기종합교육계획(1972~1986)'이 정부계획으로 채택되지 못한 일이었다. 비록 이 계획(안)의 개별적인 제안들이 정책 담당자에게 도움을 주기는 하였으나, 국가교육체제 전체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여기에는 계획의 전문성과 현실성이 미약했다는 인식이 들어 있었다. 따라서 교육정책 당국으로서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보다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 다른 하나는 비슷한 시기에 내한한 플로리다대학 연구팀이 새로운 교육체제의 연구 개발 필요성을 제안한 일이었다.

이 연구팀은 당시 중앙교육연구소와 협력하면서 교육 부문에 관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1971년 4월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보고서에서 새로운 전문교육연구기관의 필요성을 암시한 것이다. 이러한 요인을 배경으로, 1971년 11월 30일 문교부 장관은 새로운 교육전문기관의 설립을 모색하기 시작하였고, 다음 해인 1972년 8월 30일에 한국교육개발원이 개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개원 당시에는 아직 한국교육개발원의 법률적 지위가 부여되지 않았고, 재정 지원 방안도 구체적이지 못했다.

이 때문에 문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를 위한 법률 제정에 착수했는데, 그 결과가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이다. 이 법 제1조에는 법안의 목적을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등의 개발에 관한 조사 연구와 그 성과의 보급 활용을 위한 교육방송을 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국교육개발원의 활동 영역을 애초 보다 확대한 것이다. 애초에는 플로리다대학 연구팀이 제안한 활동은 '교육비를 절감하고 교육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초중학교 교육체제 연구개발'에 한정된 것이었지만, 육성법은 그 범위를 넘어 교육 전 분야 관한 기초 연구만이 아니라 그 성과를 확산할 수 있는 교육방송의 실시까지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보다 안정적인 재정 지원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였고, 이 때문에 제2조에서는 시설비 및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

으로 “필요한 시설비는 국가가, 운영비는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개발원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이후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고, 1970년대 후반부터는 국가의 장기적인 교육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교육발전의 전망과 과제(1978～1991)’, ‘장기인력수급전망(1977～1991)’, ‘장기인력수급 전망과 대책(1997～1991)’ 등은 대표적인 성과들이다.

이 가운데 ‘교육발전의 전망과 과제(1978～1991)’는 1979년 3월 9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수립된 교육부문의 장기계획으로 채택되었다. 비록 이 계획은 곧이어 발생한 정치적 사건으로 일시 중단되었지만, 1982년에 수립된 ‘제5차 경제사회발전계획(’82～’86) 교육부문계획’에 반영되어, 1980년대 중반까지의 교육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장기인력수급전망(1977～1991)’과 ‘장기인력수급 전망과 대책(1997～1991)’ 등은 산업 발전 예측에 따른 학력별·직종별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는 단초를 열었고, 특히 중등 및 고등교육 정책 수립에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한국교육개발원은 1970년대 이후,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를 심화한 것만이 아니라, 국가의 합리적인 장기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분화·확산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Chapter I

16 장기교육계획(안)

관리번호 : BA0084890
쪽　　수 : 263
생산년도 : 1979
생산기관 : 총무처

1978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작성한 ‘교육발전의 전망과 과제, 1978～91’를 기초로 하여 1979년 3월 9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수립된 교육부문의 장기계획이다. 이 계획은 제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1991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 하에, 향후 고급인력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대를 예측하면서 수립되었다. 이 기록물에는 장기교육계획 국무회의 보고안건 제출 공문, 국무회의 의안 처리 안건, 〈장기교육계획(안)〉, 장기교육계획 요약, 한국교육개발원의 보고서인 ‘교육발전의 전망과 과제, 1978～91’가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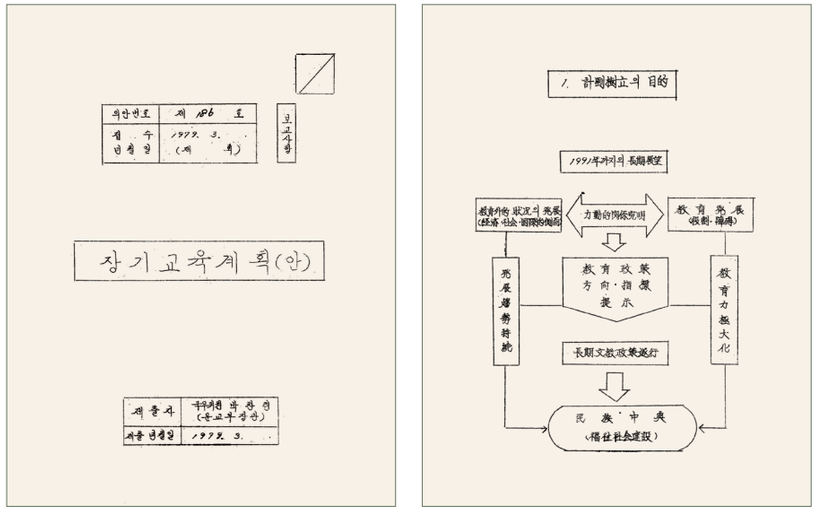

【그림 17】〈장기교육계획(안)〉 표지 및 내용 (BA0084890, 90쪽, 96쪽)

산업사회 고도화를 대비한 장기교육계획의 수립은 1978년 2월 대통령의 연두순시에서 문교부 장관이 문교행정의 장기전망과 정책방향에 관한 보고로 구체화되었다. 문

교부 장관의 연두 보고 직후, 4월부터 11월까지 기초자료 수집 및 보완이 이루어졌고, 9월부터 10월까지 주요 국가 교육제도에 대한 현지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11월 27일에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작성안 보고서(안)와 그에 따른 기본계획이 교육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다음 해인 1979년 2월 14일 대통령 보고를 거쳐, 3월 9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되었다.

장기교육계획은 1990년대의 사회를 고도산업사회, 복지사회, 도덕사회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교육계획의 방향을 각각 고급두뇌의 인력공급을 통한 성장의 지속, 교육기회의 확대와 교육복지의 강화를 통한 평등균등의 실현, 정신교육 및 도덕교육를 통한 문화창달로 설정하고, 세부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하였다. 이 가운데 정신교육 및 도덕교육을 통한 문화창달 계획은 1970년대 초부터 강하게 추진하였던 이념교육, 즉 국민교육헌장 교육, 새마을 교육 그리고 유신교육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새로운 점은 없다. 따라서 장기교육계획에서 중심적인 내용은 앞의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고급두뇌의 인력공급을 위한 교육계획은 주로 고등교육분야에서 이루어졌다.

계획(안)에서는 고등교육 취학률을 11.3%에서 31.9%로 확대한다는 전제하에 종합대학교 6개교, 전문대학교 50개교를 신설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졸업정원제의 실시, 대학입시를 예시성적과 고교내신서로 시행, 4년제 교육대학교의 신설, 대학원대학의 신설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교육기회의 확대와 교육복지의 강화를 위해서는 유치원 취원율의 확대(10% → 70%), 1986년까지 중학교 의무교육의 도입, 지역단위별 고등학교군 구성, 종합고등학교군 신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장기교육계획은 2가지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계획 실현을 위한 실천방안이 구체화되었다는 점이다. 고등교육을 확대하고, 의무교육을 강화하며, 교육과 연구 수준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반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계획이 밑받침되어야 한다. 1970년에도 장기종합교육계획(1972～1986년)이 수립된 바 있지만, 당시의 계획은 예산계획의 현실성이 낮아 정책으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이에 비하여 장기종합계획(1979～1991년)은 계획을 실현하는 데에 소요되는 예산을 구체적으로 산출하였다.

계획에 의하면, 소요예산은 1979년에는 정부예산의 19.2%, 1982년까지 22.8%, 1986년까지 25.5%, 완성년도인 1991년에 20.3%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예산 계획은 장기교육계획을 수립한 1978년 당시 17.5%를 상당히 상회하는 수준이었지만, 당시 여론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였고, 사전에 경제기획원과의 협의를 거쳐 공식적인 정부계획으로서 채택되었다.

둘째는 1980년대 이후 추진한 교육개혁과 교육정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비록 장기교육계획 자체는 시행한지 1년도 안되어 1979년 말 10.26사태가 발생하고, 이어서 1980년의 5.18 광주민주항쟁 등 정치적 격변이 일어나면서 중단되었지만, 주요 내용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1980년의 졸업정원제와 대학입시개편을 중심으로 한 7.30 조치를 시작으로, 4년제 교육대학교 신설, 중학교의무교육의 실시, 고등교육의 확대, 대학원중심대학 도입 등은 기본적으로 장기교육계획의 연속선 상에서 추진된 것이다. 또한 1980년대부터 강조되기 시작한, 취학전 교육의 확대, 특수교육 및 영재교육의 강화, 사회교육 및 평생교육체제의 실현을 위한 제반 정책의 중요한 기반도 이 장기교육계획에서 찾을 수 있다.

17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교육부문 계획(안)

관리번호 : BA0143169
쪽　　수 : 42
생산년도 : 1981
생산기관 : 경제기획원

경제사회발전계획은 1962년부터 추진된 5개년 단위의 경제개발계획이다. 1962년부터 1981년까지 추진된 4차의 계획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명명하였고, 5차부터는 경제사회발전계획이라 하였다. 교육부문 계획은 이러한 경제사회발전계획 가운데 교육에 관한 5개년 계획으로서, 교육부문 실무계획반이 작성하였다. 이 기록물에는 '제5차 경제사회발전계획('82～'86) 교육부문계획(안)', '제5차 5개년 계획 교육부문 계획(안) 정책 협의회 토의요지', 경제차관회의 회의안건 공문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계획(안)은 기본 목표 및 정책의 중점방향, 부문별 계획, 투자소요 및 재정확보 방안 등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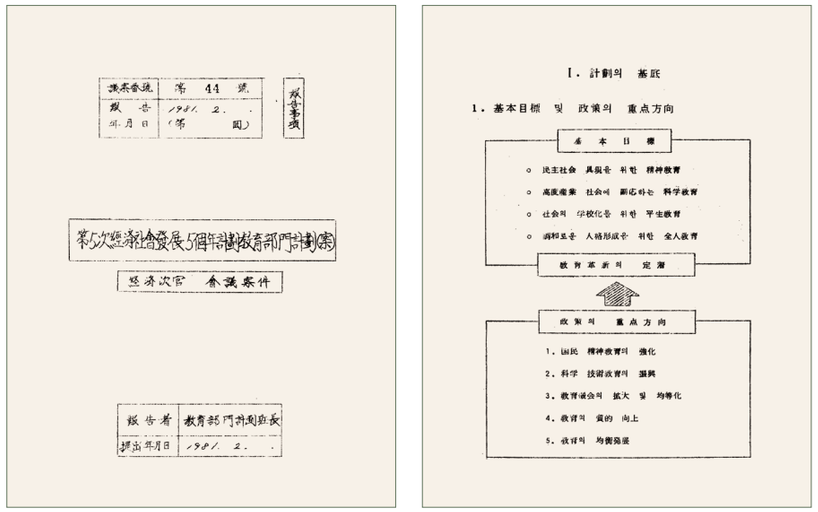

【그림 18】〈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교육부문 계획(안)〉 표지 및 내용
(BA0143169, 441쪽, 443쪽)

제5차 경제사회발전계획(1982～1986년)은 기존의 양적 성장 위주에서 탈피하여 안정, 능률, 균형을 기조로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지방 및 소외 부문을 개발하는 등 질적 발전을 추구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경제성장의 관점에 대한 변화는 교육 부문에도 반영되어, 교육의 체질 개선과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내용이 강조되었다. 원래대로라면, 이 계획은 1981년에 이미 마련되어야 했지만, 정치적 사건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계획(안) 마련이 지연되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시행된 교육정책은 사회문제화된 교육문제에 관한 것으로서, 대학입시제도 개혁과 과열과외 해소에 초점을 맞춘 이른바 '7.30 교육개혁 조치'에 집중되어 있었다.

1982년에 들어서 그동안 미뤄졌던 '제5차 경제사회발전계획('82～'86) 교육부문 계획(안)'이 입안되었는데, 그해 2월에 계획(안)에 대한 정책협의회 및 경제차관회의를 거쳤다. 그런데 이처럼 빠른 시기에 계획(안) 마련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1978년에 정부정책으로 채택된 '장기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점은 계획(안)을 수립하는 데에 참고한 주요 계획에 '4차 경제개발계획('76～'81)' 이외에 '장기교육계획('78～'91)'이 포함되고, 정책방향의 주요 내용도 대동소이 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교육부문 계획의 기본목표는 민주사회 구현을 위한 정신교육, 고도산업 사회에 부응하는 과학교육, 사회의 학교화를 위한 평생교육, 조화로운 인격형성을 위한 전인교육으로 설정하고, 세부적인 계획은 정신교육, 과학교육, 평생교육, 교육혁신의 기반 확립 등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구성되었다. 각 부문 세부계획은 다시 정책방향, 사업별 계획, 투자계획으로 구분되는데, 정책방향에서는 각 부문 세부계획의 기본목표와 정책기조를 명시하고, 곧 이어 주요 사업별 계획을 제시한 사업별 계획을 수록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투자계획에서는 1981년 당시의 예산과 제5차 경제사회발전계획 기간인 1982년부터 1986년까지의 소요예산이 사업별로 제시되어 있다.

이 계획(안) 가운데 정신교육 부문은 이전부터 강조해 온 반공교육, 새마을 교육, 민족주체성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지만, 여타의 다른 교육부문에서는 새로운 발전계획이 제시되어 있다. 과학교육 부문의 계획은 고도산업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부문에서 과학 기술 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중심을 이루고, 평생교육 부문에서는 학교 교육 이외 부문의 질적 발전을 위한 계획이 제시되어 있다. 특히 취학전 교육의 확대, 평생교육체제의 확립, 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주요 사

업으로 제시하면서, 유치원 취원율을 8%(1980년)에서 50%(1986년)로 확대하고, 「사회교육법」을 제정하며, 교육전용 방송을 실시한다는 주목할 만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교육혁신의 기반 확립에서는 국민학교 시설 확충,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1983~1989년), 교육대학 수업연한 4년으로 연장, 특수교육 진흥, 대학교육 확대 등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들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GNP 대비 공공투자 비중을 1981년 4.3% 수준에서 1982년에는 4.9%, 1986년에는 5.4%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공공투자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상향 조정, 정부예산 중 교육예산 비율을 22~25%로 법정화, 교육세의 신설, 장기상환의 교육공채 발행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5차 경제사회발전계획('82~'86) 교육부문 계획'은 1980년대 중반까지의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기본 지침이 되었고,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교육개혁 정책의 기반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Chapter I

18 교육개혁심의회 설치계획(안)

관리번호 : 1A00614174540906
쪽　　수 : 8
생산년도 : 1985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교육개혁심의회는 1985년 3월 18일에 구성되어 1987년 12월까지 활동한 교육정책 대통령 자문기구이다. 이 기구는 1985년 3월 7일에 제정된 「교육개혁심의회 규정」(대통령령 제11657호)을 근거로 조직되어, 기초 연구, 정책 시안 마련, 교육개혁의 기본 방향 제시 등을 수행하였다. 이 기록물은 1985년 2월 8일에 보고된 〈교육개혁심의회 설치계획(안)〉으로, 설치 목적·기능·성격·구성·운영·설치근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별첨에는 분과 조직 및 주요 검토내용과 위원구성이 수록되어 있다.

【그림 19】〈교육개혁심의회 설치계획(안)〉 표지
(1A00614174540906, 2,798쪽)

1980년대 초반의 교육정책은 대학입시나 과외 문제와 같은 현안 문제에 집중되었다. 1979년 3월에 '장기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991년까지의 장기전망과 교육정책의 방향을 수립하였으나, 곧이은 정치적 변란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다만 1980년 군부정권이 들어서고,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이른바 '7.30 교육조치'에 의해서 시급한 현안을 다루는 데에 그쳤던 것이다.

'7.30 교육조치'의 골자는 주로 사회문제화 된 교육현상을 해소하는 데에 있었고, 구체적으로는 대학입시제도 변경과 과열과외 해소 조치로 나타났다. 대학입시제도 변경의 기본 방향은 예비고사와 내신

성적만으로 선발하되 점차 내신 성적의 비중을 높인다는 것이었고, 과열과외 해소 대책으로는 즉각(1980. 8. 1) 일체의 과외수업을 금지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대학교육과 관련된 부수적인 조치로, 대학 입학정원을 졸업정원의 130%로 하되, 학사운영 과정에서 증원된 30%의 학생을 탈락시키는 졸업정원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7. 30 교육조치'는 대학입시 제도 변경과 같이 '장기교육계획'에서 제안된 내용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해소함으로써 군부정권의 안정을 꾀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조치들이었다.

이러한 현안 중심적 교육정책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으로서, 그 구체적인 구상이 대통령 교육정책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그동안 단절되었던 장기전망에 기초한 체계적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85년 3월 18일 각계 인사 32명의 심의위원과 교육전문가 20명의 전문위원이 위촉됨으로써 교육개혁심의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교육개혁심의회의 기능은 교육문제에 관한 국민여론의 수렴, 국가교육 전반에 관한 검토, 교육개혁을 위한 조사 및 제안 심의, 국가교육의 기본정책 및 장단기 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이었고, 이를 위해 교육제도분과, 초·중등교육분과, 고등교육분과, 교육발전분과 등 4개 분과로 구분하여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제1분과인 교육제도분과는 학제의 적절성,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고교평준화 정책의 보완, 영재교육 및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사학정책의 보완, 교육자치제에 관한 과제를 수행하였고, 제2분과인 초·중등교육분과는 청소년 지도 및 도덕교육 방안, 유아교육의 확충,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교과서 및 교육과정의 조정, 실업계 고교 교육의 내실화, 외국어 교육방법 개선, 해외 교포교육에 관한 과제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제3분과인 고등교육분과에서는 학원자율화시책의 정착, 대학(전문대, 대학, 대학원) 정원의 적정화,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전문대학 및 대학원 교육의 내실화, 지방대학 육성방안, 해외유학 및 연수제도에 관한 과제를 수행하였고, 제4분과인 교육발전분과에서는 주체적 교육이념의 확립, 교육방법의 쇄신, 교육시설의 현대화, 교육재원의 확보, 교육법규의 정비·보완, 교원양성제도와 질적 향상 및 사기앙양, 교육행정 간소화에 관한 과제를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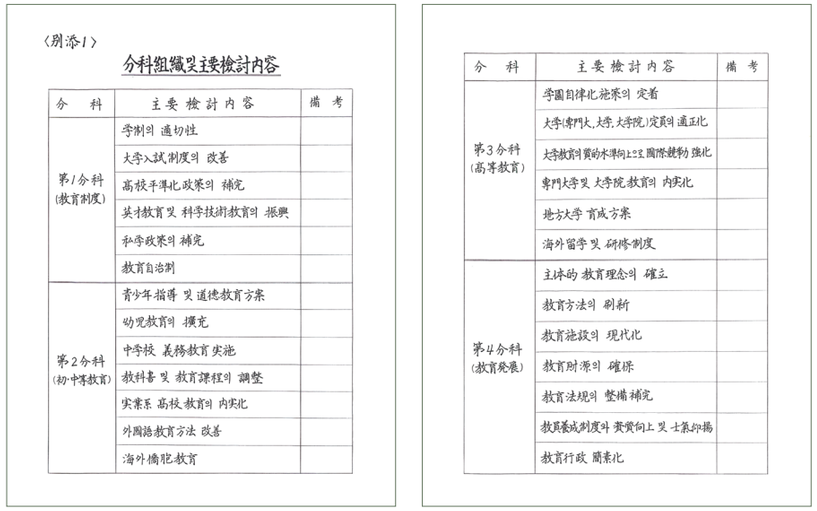

〈別添1〉

分科組織및主要檢討內容

分 科	主要 檢討內容	備 考
第1分科 (敎育制度)	学制의 適切性	
	大学入試制度의 改善	
	高校平準化政策의 補完	
	実業敎育 및 科学技術敎育의 振興	
	私学政策의 補完	
	敎育自治制	
第2分科 (初·中等敎育)	青少年指導 및 道德敎育方案	
	幼児敎育의 擴充	
	中学校 義務敎育 実施	
	敎科書 및 敎育課程의 調整	
	実業系 高校 敎育의 内実化	
	外國語敎育方法 改善	
	海外僑胞敎育	

分 科	主要 檢討內容	備 考
第3分科 (高等敎育)	学園自律化施策의 定着	
	大学(専門大, 大学, 大学院)定員의 適正化	
	大学敎育의 質的水準向上으로 國際競爭力 強化	
	専門大学 및 大学院敎育의 内実化	
	地方大学 育成方案	
	海外留学 및 研修制度	
第4分科 (敎育発展)	主体的 敎育理念의 確立	
	敎育方法의 刷新	
	敎育施設의 現代化	
	敎育財源의 確保	
	敎育法規의 整備 補完	
	敎員養成制度와 奬學制上 및 士氣昂揚	
	敎育行政 簡素化	

【그림 20】 별첨1. 분과조직 및 주요 검토내용 (1A00614174540906, 2,803쪽, 2,804쪽)

교육개혁심의회가 제안한 주요 정책으로는 유치원의 기본 학제 포함, 1997년까지 중학교 완전의무교육 완성, 학급당 학생수 40명 이내로 감축, 교과교육 전문가 양성, 수석교사제 신설, 교과편성과 운영의 재량권 부여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시차를 두면서 하나씩 실행되었다.

이 점에서 교육개혁심의회의 활동은 이전의 '장기교육계획'을 이으면서, 1990년대 교육개혁정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당시까지 교육정책의 주요 영역으로 부상하지 않았던 부문, 즉 유아교육, 특수교육, 영재교육, 평생교육 등에 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19 교육정책자문회의

관리번호 : 1A00614174609847
쪽　　수 : 38
생산년도 : 1991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교육정책자문회의는 1989년 2월부터 1993년 2월까지 활동한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 기구이다. 교육정책자문회의는 1988년 12월 27일에 제정된 「교육정책자문회의 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위원회의 구성은 각계 인사 15~20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 교육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전문위원 등으로 구분되었고, 필요에 따라 정책과제별로 소위원회를 운영하였다. 이 기록물은 1991년 2월 18일에 개최한 제5차 보고회에서 제1차 종합보고서('교육발전의 기본구상')를 제출한 후, 대통령과 자문위원 사이의 대담을 기록한 문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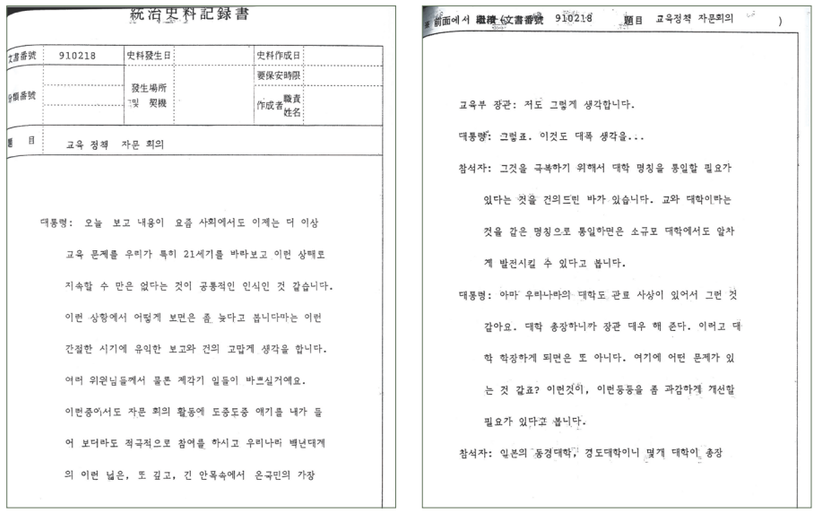
統治史料記錄書

文書番號 910218　史料發生日　史料作成日
分類番號　發生場所 및 契機　要保安時限
作成者 職責 姓名
題　目　교육 정책 자문 회의

대통령: 오늘 보고 내용이 요즘 사회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교육 문제를 우리가 특히 21세기를 바라보고 이런 상태로 지속할 수 만은 없다는 것이 공통적인 인식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늦다고 봅니다마는 이런 간절한 시기에 유익한 보고와 건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계각기 일들이 바쁘실거예요. 이런중에서도 자문 회의 활동에 도중도중 얘기를 내가 들어 보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우리나라 백년대계의 이런 넓은, 또 깊고, 긴 안목속에서 온국민의 가장

前面에서 繼續 文書番號 910218　題目 교육정책 자문회의)

교육부 장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그렇죠. 이것도 대폭 생각을...

참석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학 명칭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교와 대학이라는 것을 같은 명칭으로 통일하면은 소규모 대학에서도 알차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 아마 우리나라의 대학도 관료 사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대학 총장하니까 장관 대우 해 준다. 이러고 대학 학장하게 되면은 또 아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이런것이, 이런등등을 좀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석자: 일본의 동경대학, 경도대학이니 몇개 대학이 총장

【그림 21】〈교육정책자문회의〉 종합사료기록서 내용 (1A00614174609847, 76쪽, 83쪽)

1985년 3월에 구성된 전두환 정부의 교육개혁심의회는 1987년 12월까지 약 3년 간 대통령의 교육자문활동을 수행하였다. 1988년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자, 교육자문기구를 새로 조직하였는데, 초기에는 교육부 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중앙교육심의회를 설치하였고, 그해 말에는 「교육정책자문회의 규정」을 제정하여 대통령 교육부문 자문기구로서 교육정책자문회의를 설치하였다.

설치 초기에는 1989년부터 1990년 말까지 2년 간 활동하기로 계획되었으나, 기한이 연장되어 1993년 12월까지 4년 간 존속되었다. 자문회의는 1989년 6월 16일 제1차 보고회를 시작으로 총 6회의 보고회를 수행하였는데, 제1차 보고회에서는 독학을 통한 학제 인정 방안, 교육전담 방송체제 확립 방안,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고, 1989년 8월 31일 제2차 보고회에서는 초중등교원 종합대책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1990년 2월 8일 제3차 보고회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정상화 방안, 초중등학교 단계의 직업기술교육 개선 방안, 대학교육 개선 방안, 사학 진흥 방안, 대학입학시험제도 개선(안) 등이 제출되었고, 1990년 8월 21일 제4차 보고회에서는 7대 교육개혁 방안을 제출하였다.

주요 내용은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교육 방안, 교육의 지역 간 균형 발전 방안, 고급인력 개발 활용 방안, 국민의 도덕성 함양 방안, 교육복지 구현 방안, 사회교육 진흥 방안, 교육재원 확충 방안 등이었다. 최초의 종합보고서('교육발전의 기본구상')는 1991년 2월 18일 제5차 보고회에서 제출되었다. 이 보고회의 중심 내용은 정보산업 시대를 대비한 과학기술교육 강화, 청소년 지도 강화, 대학입시제도 자율화, 대학교육의 다양화 및 개방화 등이었다.

그리고 1991년 10월 1일 제6차 보고회에서는 이제까지의 보고회를 총괄하는 8대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는 교육 방안, 의무교육 발전 방안, 대학정원정책의 발전 방안, 민족동질성 회복 교육대책, 교직사회의 발전 방안, 산학협동 교육체제 구축 방안, 고등교육기관 적정 배치 방안, 특별회계 발전 방안 등이었다.

교육정책자문회의는 이후 대학입시제도를 수학능력시험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고, 고등교육의 다양화와 평생교육의 강화 방안으로 독학 학사관리 제도와 교육전담 방송이 시행되었으며, 교육환경 특별회계 정책 확립에도 영향을 미쳤다. 교육정책자문회의의 교육개혁(안)은 이전에 비하여 상시적인 교육개혁 자문활동을 전개함으로

써 실행력이 높았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교육정책자문회의의 제안 사항 가운데 산학협동체제 구축 강화나 세계화 시대에 대비한 교육정책 수립 등은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교육정책자문회의(대담록)〉은 1991년 2월 18일에 시행된 제5차 보고회를 마친 후 노태우 대통령과 자문위원 사이의 대담을 기록한 문건이다. 대담은 노태우 대통령의 서두 발언, 대통령과 자문위원 사이의 문답 그리고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되었다. 대담의 주요 내용은 보고회와 연계된 것으로, 일본 예술계 대학의 입시제도 현황, 종합대학을 지향하는 국내 고등교육기관들의 문제점과 대책, 대학입시에 적성시험 반영 방안, 과학기술 인력 수급 실태와 양성 문제, 청소년 범죄와 교육 방안 등에 관한 것들이다.

이 점에서 대담은 보고서에 잘 드러나지 않는 대통령의 교육문제에 관한 인식과 자문위원의 기본적인 입장을 생생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Chapter I

20 창조적 지식국가 건설을 위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1999~2003)

관리번호 : DA0768950
쪽　　수 : 342
생산년도 : 1999
생산기관 : 교육부

〈창조적 지식국가 건설을 위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1999~2003)〉은 국민의 정부(1998~2002년)가 수립한 교육발전 계획이다. 이 계획은 1998년 9월 교육부의 주도 하에 '제2의 교육입국기획단'을 설치하여, 1999년 2월 계획서 시안을 마련하였다. 이 시안은 이후 각 지역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그리고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었다. 이 기록물에는 〈창조적 지식국가 건설을 위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1999~2003)〉 시안 요약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의견조사 설문지, 교육부 보고 자료 및 시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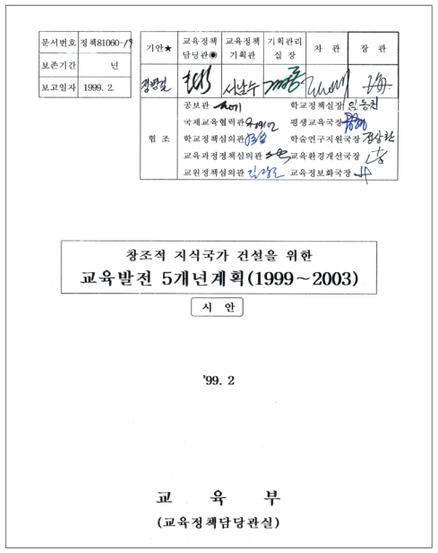

문서번호	정책81060-17
보존기간	년
보고일자	1999. 2.

기안★	교육정책담당관◉	교육정책기획관	기획관리실장	차관	장관
정원철		서남수			

협조: 공보관, 국제교육협력관, 학교정책심의관, 교육과정정책심의관, 교원정책심의관, 학교정책실장, 평생교육국장, 학술연구지원국장, 교육환경개선국장, 교육정보화국장

창조적 지식국가 건설을 위한
교육발전 5개년계획(1999~2003)

시 안

'99. 2

교 육 부
(교육정책담당관실)

【그림 22】〈창조적 지식국가 건설을 위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 표지 (DA0768950, 1쪽)

1980년대 이후 각 정부는 교육자문기구를 설치하여 교육개혁을 추진해왔다. 전두환 정부의 교육개혁심의회, 노태우 정부의 교육정책자문회의,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가 역대로 설치되었고, 1998년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도 그해 7월 새교육공동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민간 위촉위원과 정부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정부 당연직 위원에는 행정자치부 장관, 교육부 장관,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이 임명되었다. 이러한 조직구성은 관련 부처의 장관을 자문위원에 포함시킴으로써 교육개혁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대통령 교육자문기구가 설치된 직후인 1998년 9월, 교육부는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서 준비에 착수하였는데, 그 작업은 교육부 내에 새로 발족한 '제2의 교육입국기획단'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었다. 기획단은 교육부 각 부서의 실무 자료와 자체적으로 수집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1999년 2월에 시안을 작성하였고, 5월에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 정책으로 확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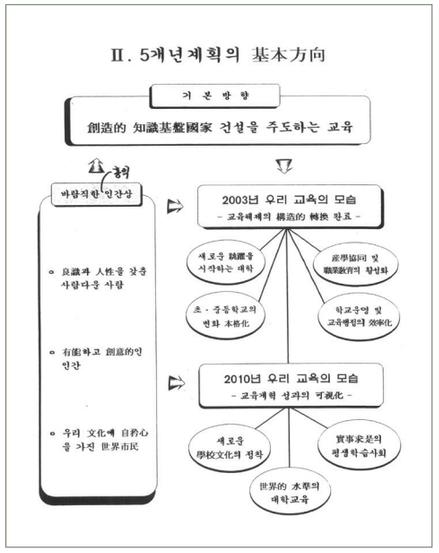

【그림 23】 5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
(DA0768950, 325쪽)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2000년 9월 해체되고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로 업무를 이관했지만, 〈창조적 지식국가 건설을 위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1999~2003)〉은 국민의 정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계획은 향후의 사회를 지식기반사회로 예측하고, 창의적인 능력 함양과 인간 중심의 교육공동체 구성을 중심적인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배우는 즐거움으로 활기가 넘치는 학교, 가르치는 보람과 긍지가 충만한 교직사회, 지식강국의 초석으로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 산업수요와 연계된 직업교육과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학습 사회, 창의적인 학습과 인간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쾌적한 교육 환경, 사이버 공간과 지구촌을 학습의 장으로 만드는 정보화와 세계화, 국민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학교 운영과 교육 행정을 8대 정책 목표로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또한 교육계획의 주요 부문을 의미하기도 한다.

세부적으로는 이러한 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67개 핵심정책의 연차별 계획을 제시하였다.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획일적인 입시위주 교육을 해소하고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키우기 위해서 대학입학제도를 소질과 적성 중심으로 전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5년 간 9조 2천억 원 투자, 교육공동체 강화를 위한 학부모 참여 확대와 학교현장 개혁 지원,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교직발전 종합대책 추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중점 대학원대학 및 지역 우수대학에 1조 4천억 원 투자, 산업수요와 연계된 직업교육과 평생교육 진흥, 교육정보화와 세계화 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정보화 기반 확충 및 국제이해교육 강화, 교육복지 확대의 일환으로 유아교육 기회 확대 및 초·중등학교 급식 전면 실시 등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종합계획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은 5년 간 총 113조 699억 원으로 추정하고, 재원으로는 국고 20조 9,548억 원, 지방교육재정 92조 1,151억 원을 산정하였다. 그리고 기타 민자유치를 통해 1조 3,313억 원을 충당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창조적 지식국가 건설을 위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1999~2003)〉은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초·중등 및 고등교육은 물론 평생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 전 부문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고, 그러한 개혁 작업의 기본 바탕을 이루는 교육행정, 교원정책, 교육환경, 교육조직 등에 관한 개선책까지 망라하고 있다.

이 계획(안)의 기본 골격은 참여 정부(2003~2007년)에도 이어져 당시의 교육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 활동에도 도움을 주었다. 이것은 이 계획이 1980년대 이후 양적 발전 정책에서 탈피하여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된 흐름을 총괄하면서, 21세기 한국교육 발전의 기본 바탕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